

2023. 봄 통권 제1호

전북노동 브리프

JEONBUK LABOR BRIEF

초점

- 2023년 정세전망
- 2023년 달라진 노동법
- 주69시간제는 과로사법

칼럼

- 다음을 빼앗긴 소희에게, 다음 소희는 없을 거라 말하기 위한
- 견고한 성(城)을 깨부수는 노동자들의 여정

동향

- 2022년 전북지역 고용 · 노동 · 산업 · 가계 동향
-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2023년 봄
통권 제1호

계간 전북노동브리프

전북노동브리프

JEONBUK LABOR BRIEF

편집위원장

김연탁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편집위원

강문식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조용화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박영민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법률지원센터)

황선호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법률지원센터)

김음표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법률지원센터)

발행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엄경석 · 박영민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법률지원센터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

전 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ISSN | 2982-6101

값 7,000원

목차

초점

- 2023년 정세전망 3
- 2023년 달라진 노동법 24
- 주69시간제는 과로사법 43

칼럼

- 다음을 빼앗긴 소희에게, 다음 소희는 없을 거라 말하기 위한 53
- 건고한 성(城)을 깨부수는 노동자들의 여정 58

동향

- 2022년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65
-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97

01

전북노동브리프



초점

- 2023년 정세전망
- 2023년 달라진 노동법
- 주69시간제는 과로사법

2023년 정세 전망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었던 인플레이션, 그에 대응하는 금리 인상, 만성화된 저성장과 늘어나는 부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화, 기후-에너지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지구적 현실은 그동안의 자본주의 체계를 무엇으로 정의하든 그것의 경제·정치·사회 질서의 재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각 주제를 2022년 정세 전망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었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완한 바 있다. 2023년의 세계는 1년 전에 다른 주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을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경제의 연착륙 여부에 있다. 미국 주도의 경제-정치 블록화의 향방도 중요 주제이다.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지형이 노동 및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적이다.

2. 둔화되는 인플레이션, 증가하는 불안정성

1) 인플레이션 둔화와 자기실현적 경기침체 예언

세계경제는 2020년 상반기에 공황을 겪고 그 해부터 2021년까지 빠르게 회복되었다.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완화적 통화정책은 자산 거품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고 조세 없이 부채에 의존한 확장적 재정정

책은 수요압력으로 돌아와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¹⁾. 경기둔화와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가 직면한 일련의 현상의 배경에는 낮아진 자본의 수익성, 즉 만성화된 장기저성장 체제가 있다. 2022년 들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통화긴축(금리인상)을 통해 노동계급과 주변국에게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2년 3.4%에서 2023년 2.9%로 낮아지고 미국은 1.4%, 한국은 1.7%일 것으로 전망한다(IMF, 2023). 미국의 경우 긴축정책의 결과로 실물경제가 연착륙에 실패하고 경기침체²⁾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존재한다. 비판론자 중 대표적인 래리 서머스는 202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중앙은행이 가격안정에 초점을 맞추던 데서 선부르게 이탈하면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두 번 해야만 하며 그것은 최악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1970년대 통화긴축 후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자 정책을 완화했던 것이 정책 실패 요인이었다는 진단에 근거를 둔다.

뉴케인지언 경제학 모델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높은 실업률(경기침체)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폴 볼커의 반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의지(와 그에 대한 백악관의 지지)가 대중들에게 전달되어 1980년대 인플레이션을 잠재웠다는 해석이 미 경제학계에서 통용된다. 이를 따르는 미 Fed는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때까지 Fed가 통화긴축을 지속한다는 강력한 기대를 가져야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과장하여 표현하면, 인위적 경기침체를 통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겠다는 미 Fed의 기조 자체에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정책적 접근은 노동자 임금을 향한 공격으로도 연결된다.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 계급의 조직력이 건재했던 1970년대에는 긴축정책의 관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저항을 꺾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다. 오늘날의 세계는 50년 전과 판이함에도 낡은 교리는 반복된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 물가-임금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고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김정성 외, 2022)이라고 주장하고,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금 인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은 물가 인상 국면에서 가장 나쁜 시나리오³⁾”라고 밝힌다. 이른바 나선효과(spiral effect)다.

1) 물론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망의 훼손, 노동인구의 대퇴직과 같은 공급 충격의 지분이 컸으나, 공급 요인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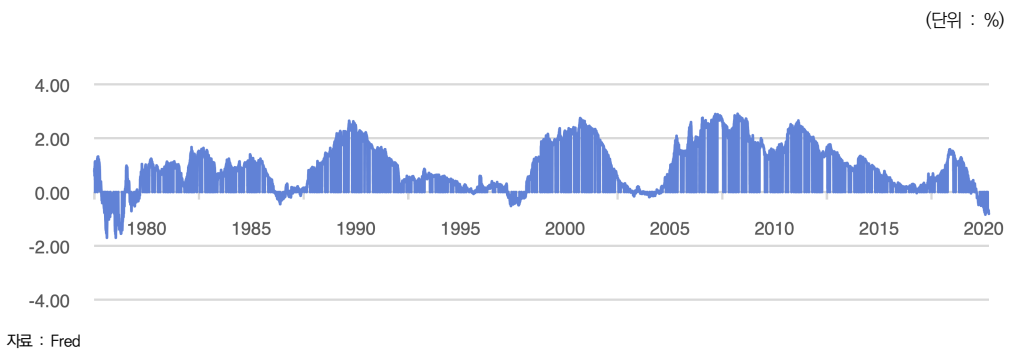
2) 통상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을 이른다.

이들의 우려와 달리 2022년 이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서 나선흐과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자 계급은 실질임금 하락에 직면했다. 그 배경은 1980년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훼손되어 크게 낮아진 노동자계급의 조직력·협상력에 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피해 없이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은 고인플레이션 시기 전으로 복귀했고, 공급 측 요인(원자재 가격, 주거비 등)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최근 경제 논쟁의 쟁점은 2023년 미국 경제의 연착륙과 경기침체(스태그플레이션) 사이에 형성되었다. 미국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금리차는 마이너스 0.8% 수준⁴⁾으로 확대되었고 설비가동률은 작년 9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통화정책의 파급에는 시차가 있어 통화긴축의 효과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기업의 실적 악화,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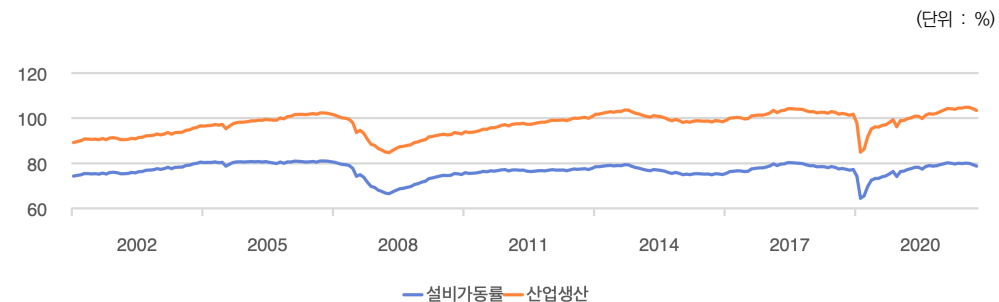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 금리차



3) “7.6% 임금 인상→물가 자극… 인플레이션 최악 ‘나선흐과’ 등장”, 조선일보, (2022.7.10.),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10/UAQNUT5K6NFHXFTAJ3XIGPDHQ4/

4) 1980년대 이후 최대이다.

[그림 2] 미국 설비가동률과 산업생산



주 : 산업생산은 2017=100
자료 : Fred

그러나, 경기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할 만한 경제 지표 역시 뚜렷하지 않다. 실업률은 여전히 낮고 구인률은 완만히 감소 중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실질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 여력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공황 이후 자본의 신규 투자를 과잉 수준으로 진단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또한 긴축정책은 경기침체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확산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기침체의 주요 선행지표로 다뤄지는 장단기 금리차, 다시 말해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가격 상승)에는 경제주체들이 긴축정책이 생산에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다. 비관론자들의 경기침체 전망이 자기실현적 예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자본 수익성을 장기 평균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기는 찾아볼 수 없지만, 2023년 내 미국에서 경기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한다는 전망은 과도하다. 특히 운동 진영 내에서 위기를 예견하는 인사, 단체가 다수 있으나,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기 전망은 노동사회운동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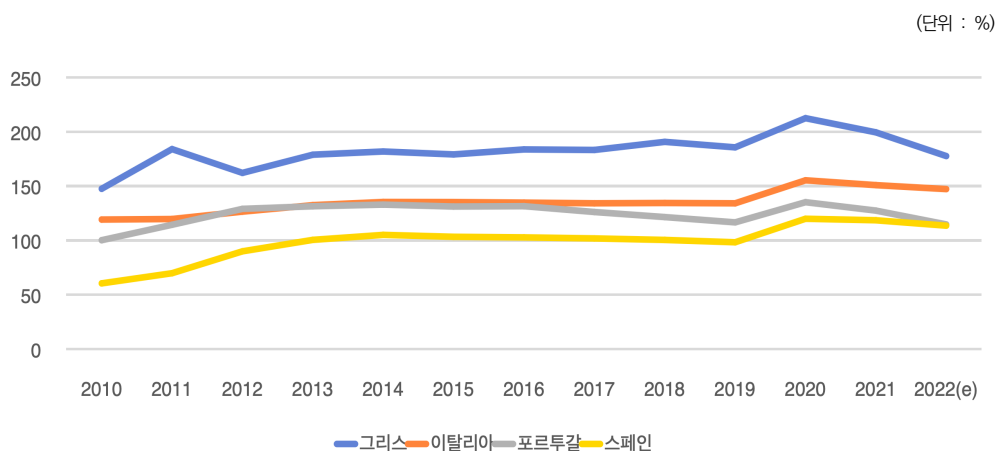
2)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시아를 미국 및 주요 선진국에서 남반구 국가와 신흥국으로 넓히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눈에 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달러화를 강제로 만들어 신흥국에서는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해외 채무의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반대급부로 미국은 달러화 가치가 상승한 만큼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수입할 수 있다. 이같이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켜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정책을 ‘근린공핍화 정책’으로 일컫는다. 국제금융협회(IIF)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20곳을 조

사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달러 표시 부채 비율은 작년 1분기 평균 24.6%로 2019년 말보다 1.1%p 높아졌다. 또한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 인상) 이후 세계 각국은 환율과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선 바 있다.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긴축정책은 자국 노동자 가계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음과 동시에 신흥국의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을 강요한다. 신흥국은 미국과 주요 선진국의 통화 재정 정책에 종속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부채위기 역시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1980년대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외채위기와 이를 계기로 남반구 국가들에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가 이식되었던 역사는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신흥국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외 채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포르투갈·그리스·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도 부채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신흥국이 직면한 부채 위기는 근린공핍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각국 정부는 부채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긴축 정책에 나서고 있는데,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가 재정이 취약한 신흥국일수록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 클 것이다. 장기저성장 체제에서는 미래의 성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위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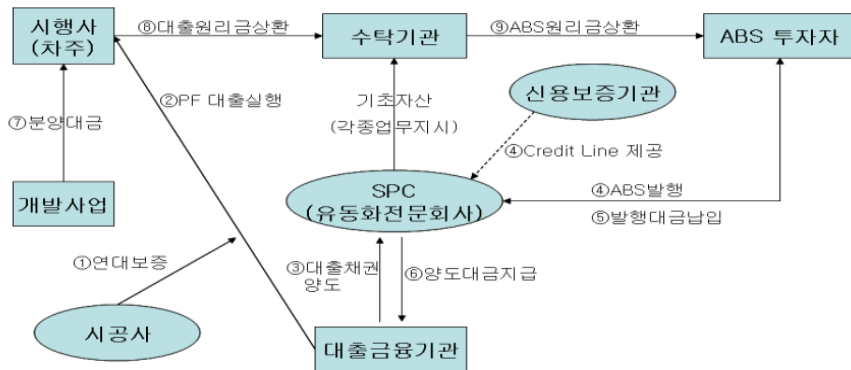
[그림 3] 남유럽 국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주 : 2022년은 추정치
자료 : IMF(2022)

민간 부채의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민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 연계 부채다. 2021년 말, 한국의 가계대출 중 주택시장과 연관된 대출 비중은 67%에 달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하락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 최근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연계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업대출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미국의 부채담보부증권(CDO)⁵⁾의 부실에서 촉발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2008년 위기 이후에도 ‘금융의 증권화’는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는데 PF 자금 시장 역시 그 일부로 볼 수 있다. PF 자금시장의 대략적인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금융회사들은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채권은 유동화회사(SPC)로 넘긴다. 신용이 낮은 영세한 시행사가 많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시공사의 채무보증으로 신용을 보강하는 경우가 많다. 유동화회사는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모으고 이 때 증권사는 신용을 제공한다. 투자금은 1금융권 은행사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조달된다.

[그림 4] PF유동화증권의 발행 매커니즘



출처 : 김훈 외(2008)

전세계에서 2010년대 이후 오랜 기간 이어진 저금리 경제가 금융자산, 특히 부동산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이와 같은 건설 기업과 금융 기업의 불건전한 공생을 심화시켰다. 2022

5) 부채담보부증권(CDO)은 모기지론을 실물자산으로 하는 자산담보부증권(ABS)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조각(트랜체)을 집합화한 이후 다시 조각 내 발행한 증권을 뜻한다.

년 6월 기준 한국의 전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은 112조 2천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8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하락 및 미분양은 유동화증권의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유동화증권의 부실은 PF 대출금을 댄 은행과 시행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공사나 시공사로 파급된다.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권 시장으로 금융 경색이 확산되기도 했다. 다만, PF 유동화증권이 파생상품과 달리 제2, 제3 유동화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실이 전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로 PF-ABCP 등을 매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후 금융 경색은 완화되었으나, 건설 기업과 금융 기업에 아무 비용을 지우지 않고서 정부가 부실을 책임지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 아니다.

회사채에 의존해 온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부실도 쉽사리 해결될 수 없는 뇌관이다.

1990년대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하던 중국은 미약한 자본축적의 해결 방법으로 적극적인 회사채 시장 육성에 나선다. 여기에 201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개발사업에 나서게 하는 유인이 되었다(강문식·조용화, 2022). 2022년 1~11월, 중국 부동산 회사의 역외 채권 디폴트 규모는 259억 달러로 직전 해에 비해 360% 증가했고, 디폴트율은 20.1%까지 높아졌다(한국은행, 2023).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부도를 맞거나 자금 압박으로 주택 공사를 중단하면서 주택구매자들이 대출금 상환 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결정 이후 민심을 달래려는 목적으로 종합부양책(22.11.11.)이 발표되었지만 부실 부동산 기업을 존치시키는 대책은 위기를 일시 지연시키고 그 규모를 키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3.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와 전후 체제의 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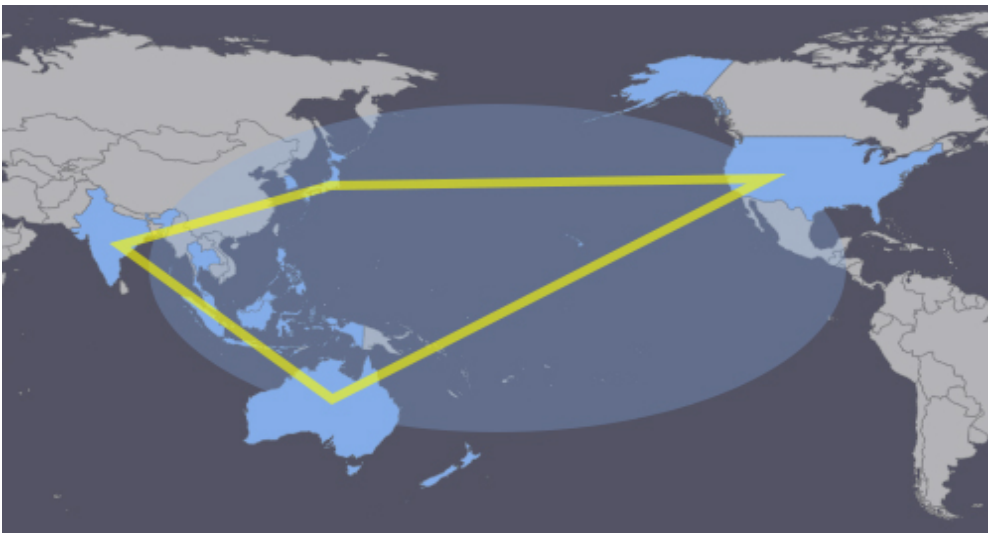
1)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미국의 대외정책

미국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WTO, FTA로 상징되던 다자간 세계질서는 미국의 동맹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제블록으로 전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주의적 대응보다 동맹으로 제한된 다자주의를 내세운다는 차이가 있으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서 드러나듯 고립주의·자국 우선주의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 다자주의에서의 후퇴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던 오바마의 발언에도 함축되어 있다.

미국이 구성 중인 경제블록은 안보와 경제를 결합한 형태이며, 구체적으로는 안보를 매개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구상이다. 미국은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독재 체제의 대립으로 이분하며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가치 중심의 결집을 호소한다. 권위·독재 체제로 지목된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다. 그러나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은 중국에 있으며 각종 동맹 간 다자기구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는 CHIP4(202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2022)가 있다. CHIP4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설계와 장비, 원천기술을,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일본은 소재·부품을, 대만은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IPEF는 포괄적 경제협약체로 설계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해 13개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군사동맹인 쿼드(QUAD)(2017), 오커스(AUKUS)(2021)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상징한다. QUAD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이 안보를 주제로 갖는 체제로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현재는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AUKUS는 미국·영국·호주의 삼각동맹으로 미국은 오커스 창립과 함께 호주에 핵잠수함 연료를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외에도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미주경제변영파트너십(APEP)(2023)을 구성 중이다.

[그림 5]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주 : 노란선-QUAD, 하늘색-IPEF

외교안보연구소의 보고서(강선주, 2022)를 참고하면, IPEF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IPEF는 시장 접근(관세 인하)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차이가 있다. 또한 IPEF는 경제 연결성, 경제 회복력, 청정 경제, 공정 경제라는 4개 필라(기둥)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은 모든 필라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는 있으나 이를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았다. 참여국 들은 협상에 참여할 필라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은 IPEF를 의회 비준이 수반되지 않는 행정협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IPEF 참여에 따른 경제적 이점이 명시적이지 않고 합의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참여국들이 높은 수준에서 규제에 합의할 인센티브가 낮다.

사회운동은 대체로 IPEF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중국 경제포위망⁶⁾”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IPEF는 미국의 전략에 따라 대중국 포위망에 참여한 국가들에 제공할 뚜렷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기 어려울만큼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실정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란 용어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이 주장하는 ‘가치와 규범 중심의 연대’는 동맹을 중심으로 블록화된 질서이다. 그 ‘가치와 규범’ 역시 선택적 정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2) 중국 부상의 한계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군사적 긴장의 증가에는 지경학(地經學)적 의미가 있다. [그림 5]에서 보듯, 대륙국가인 중국은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앞바다에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일본·대만·필리핀 등에 미군을 주둔시켜 왔으며, 최근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한다는 함의가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륙 서부로 진출하는 일대일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쳐왔으나 동시에 해양으로의 진출도 도모해왔다. 2012년에 첫 항공모함을 취역했고 남중국해·센카쿠 열도·대만해협 등에서 영유권 분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 하에서 헤게모니를 가졌던 국가는 모두 해양 국가였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몽(中國夢·중국인의 꿈) 부활을 위해 해양 진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대체한 헤게모니 국가가 될 가능성은 낮다. 우선 「2022년 정세전망」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중국 경제는 성장 및 투자 둔화, 기업 부채, 인구 고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중국 내 지역 간, 계층 간 빈부 격차 확대도 심각하다. 그러나 중국에서 저하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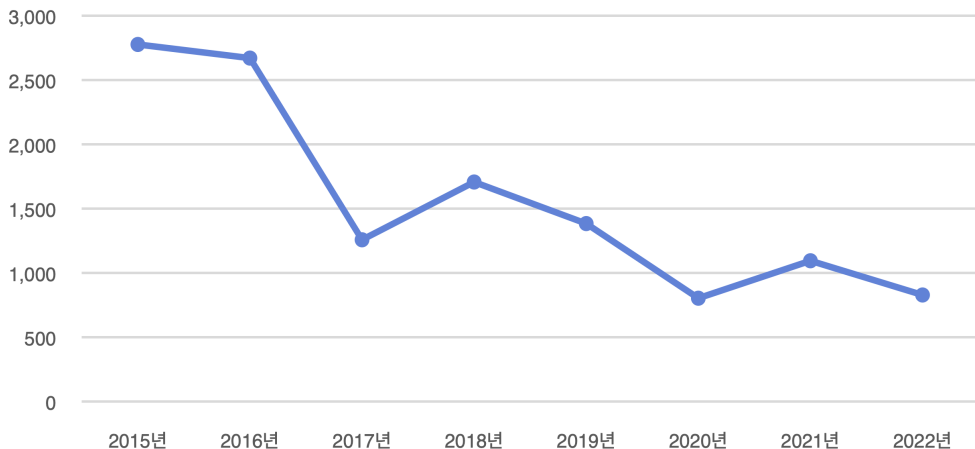
6) “미국 주도 IPEF 반대한다”, 한국농정, (2022.7.1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8021>

본의 생산성을 만회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또한 중국식 사회주의로 일컬어지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20세기 초 영국(가족 기업) 해계모니를 대체했던 법인 혁명의 경험과 달리 현재의 성장성 하락을 만회할 새로운 자본 형태를 제시하지 못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전후 미국 주도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비해 수용성 있는 표준적 제도와 가치를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해 격대지정 불문율을 깨트렸고 상하이방-공청단계도 지도부에서 퇴출했다. 덩샤오핑 이후 성립된 집단지도체제의 종말이다.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정치제도로의 전환은 향후 중국의 경제적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점과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의 통제적·억압적 사회 체제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부는 노동자·시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한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시민 감시에 활용해왔다. 인터넷 검열 장벽인 ‘그레이트 방화벽’, AI를 이용한 안면인식 감시 시스템인 ‘스카이넷’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대대적으로 형법을 개정해 시민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 있는 근거를 확대했다. 특히 테러 위협과 소수민족의 독립 의지 분출을 개정 사유로 들어 형법의 공공위해죄 조항이 집중적으로 개정되었다. 2017년 무렵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이루어진 심각한 폭력과 기본권 제약은 이 형법 개정과 무관하지 않다. 노동운동 탄압도 강화되었다. 중국노동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역에서 벌어진 노동쟁의는 2015년 2,776건에서 2022년 829건으로 감소했다. 쟁의 건수의 감소 역시 통제·억압 체제의 강화와 무관할 수 없다.

[그림 6] 2015~2022년 중국 노동쟁의 건수



자료 : 중국노동통신

중국의 억압적인 기본권 제약은 COVID-19 대응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중국 정부는 이른바 ‘제로코로나 정책’을 표방하며 확진자 0명을 목표로 방역정책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내용은 국경과 도시의 봉쇄다. 항공편이 제한되면서 중국 시민은 해외로의 입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2021년 1월 23일 우한 봉쇄를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 되는 도시는 전면 봉쇄와 해제를 이어갔다. 모든 시민은 3일 주기로 PCR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았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시민은 집단 수용 시설에 격리되었다. 또한 모든 시민은 휴대전화에 헬스코드(健康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PCR검사 결과와 14일 간의 방문기록을 입력한 뒤 QR코드를 발급받아야만 대중교통 이용이나 건물을 입장할 수 있었다.

중국 정부의 COVID-19 방역 정책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통제·억압적 방역 정책을 바탕으로 독재적 지배 체제를 공고하는 효과가 있었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정책’에 힘입어 2021년에는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 들어 방역정책의 강도는 더욱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공동주거시설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의 출입을 막는 데까지 이르렀다. 공장도 마찬가지였다. 노동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생산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통에

노동자들이 봉쇄 전 탈주하는 풍경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의 ‘비과학적’ 방역정책은 결국 감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으며, 3년 동안 이어진 극단적인 기본권 제약에 고통받던 시민들이 저항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저항은 통제·억압을 유지의 동력으로 삼는 체제의 불안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중국 정부는 2022년 10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를 앞두고 ‘제로코로나 정책’에 전력을 다했다. 2022년 11월 들어서는 봉쇄와 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쓰촨성 청두를 전면 봉쇄하는 등 기존의 체제를 이어갔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주거시설의 입구를 봉쇄하는 방역 정책 때문에 시민들이 화재에도 대피할 수 없어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국 전역에서는 정부의 검열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백지를 든 ‘백지시위’가 전개되었다. 그 영향으로 중국 당국은 2022년 12월 이후 방역정책을 빠르게 완화했으나, 동시에 ‘스카이넷’과 휴대전화 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구금하여 저항을 잠재웠다.

중국의 정치·사회 제도가 통제·억압에 의한 지배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는데 따른다. 통제·억압을 기초에 두는 정치·사회제도는 새로운 국제 질서로도 수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넘어서는 장기 집권을 시도한다면 통제·억압의 강화만으로 늘어나는 불만을 잠식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새로운 사건이 필요해질 것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그 사건이 대만을 향한 군사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 전후 세계 질서의 퇴조

미국과 서방 국가는 이런 점을 들어 세계를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로 양분하고 각국에 민주주의 진영에 참여할 것을 주문한다. 여전히 ‘자유’를 외치지만,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가 하던 50-60년대의 자유와 다르다. 미국은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명분 삼아 자국의 무역정책을 보호주의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운동 진영 역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퇴조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경험을 되짚으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의 과잉축적과 낮은 이윤율이 지속 되다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다. 각국은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우선하며 보호주의를 취했고 국제 무역이 축소되었다. 공황의 여파로 금본위제가 붕괴되었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통화권(파운드, 마르크, 엔, 달러)별로 경제 블록이 형성된다. 각 블록 내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지배는 더욱 견

고해졌다. 후발 국가이던 독일·이탈리아·일본은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보호주의와 함께 군비 확장에 나섰다. 나치의 집권을 비롯한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대두된 것도 이 시기이다. 결국 전 세계의 보호주의, 블록경제화, 군비경쟁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간기를 반성하며 서구에는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수립되었다. 전후 미국과 영국의 노동조합 역시 보호주의 입장을 폐기하고 후발국, 후진국에 국제적인 노동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영일, 2017). 사실 국제 노동운동 내에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 대신 애국심을 택했던 경험이었다. 그래서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ILO)는 모든 나라와 공장에 적용되는 국제노동법을 제정하는 조직으로 제안되었다. ILO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반성하며 필라델피아 선언을 발표한다. 각국의 노동조건 및 생활수준을 끌어올려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후 자본주의는 유례없는 장기 호황을 구가했고, 사회주의권 세력 및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강세도 전후 세계 질서의 중요한 단면이다. 노동운동 역시 성장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총의 노동대표성을 승인하며 노사 관계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도래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와 그 이후 지속 되는 장기적인 저성장 체제는 상황을 바꾸고 있다.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 측의 대응으로 노동자 계급의 조직력과 동원력은 크게 약해졌다. 이는 전후 수립된 노사관계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토대가 훼손되었음을 의미한다. 각국에서는 대대적으로 분열과 고립을 선동하는 극우 정치 집단이 그 나라의 정상 정치세력으로 사회적 승인을 얻었다. 미국 브라질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의사당 난입⁷⁾,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의 약진, 이탈리아 극우정당 이탈리아형제들의 집권 등 극우 정치 세력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는 보호주의·고립주의가 ‘자유’라는 가치의 외피를 쓰고 등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현 국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전후 체제의 퇴조로 정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미국의 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착취 체제를 지탱해온 것이 사실이나, 보호주의는 자유주의보다 퇴보한 이념이라는 점

7) 한국에서는 2019년 12월 16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일명 태극기부대 회원 수백 명이 공수처법·선거법 저지를 외치며 국회에 난입한 사건이 발생했다. 시위대가 국회 본청에 진입하지는 못했으나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이들을 환영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가담한 자들 중 14명만 벌금형의 약식기소에 처해 졌다. 약식기소 된 인사 중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경사노위위원장으로 인선 된 김문수도 포함되었다.

에서 더 큰 문제다.

전후 체제의 퇴조는 전면적 세계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최근의 노동운동·사회주의 운동의 국제적 결속은 미약하다. 미국 주도 자본주의의 퇴조 자체를 환영하는 운동 진영 일각의 입장은 사회주의 운동의 자리를 중국·러시아로 대체하고 있으나 중국·러시아의 체제를 인민에게 호혜로운 대안사회의 모델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제 1~2차 세계전쟁 기간, 전쟁과 파시즘에 맞섰던 노동운동의 경험은 현재에도 교훈을 제공한다.

4) 한국의 정치 지형과 사회운동

한국의 정치 지형은 이념적으로 퇴보하는 전 세계의 상황을 반면교사한다.

보수 양당의 편가르기 정치 - 이른바 내로남불은 이념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남는지를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은 ‘자유주의자’이며 권위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실의 고압적 태도, 간첩 조작사건 연루 검사의 대통령실 임용, 대통령(실)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공안통치기구를 이용한 공안 물이 등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그간 행보는 ‘자유’와 거리가 멀다. 전광훈 및 태극기 부대와 행보를 함께 한 인사를 장관급 자리에 인선하고, 극우 인사와 유튜버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소리 높이는 장면에 이르면 보수주의를 넘어 극우적 색채도 농후하다. 상대를 절멸해야 할 세력으로 규정하면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으로서 정치는 포기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총력을 다해 전 정권 지우기에 나서는 태도 역시 여기에 연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운동 일각은 현 정권의 속성을 ‘검찰독재’로 규정한다. 검찰독재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그동안 검찰이 조국, 윤미향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에게 행한 수사가 편향적이거나 조작되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 사건 무마, 과잉 수사 등 권력 남용은 오랜 기간 검찰개혁 요구의 근거가 되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제한하는 방편으로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되기도 했고,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역시 오랜 쟁점이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 통로를 넓히는 것,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도 개혁 담론을 구성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 세력의 검찰개혁 담론의 초점은 수사 기소의 과잉에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론의 뿌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닿아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초점은 수사 기소의 과잉보다는 선택적 불수사·불기소에 있었어야 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시 법무부장관에 의한 수직적 통제가 아니라 선택적 불수사·불기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여야 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파괴 공작을 기소하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해 온 반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고, 사측에 유리하게 해석·운영되어온 경향”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검찰개혁 담론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확장되어 갔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권 유력자들을 겨냥한 수사 기소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이 되어 버렸다.

특히 이들은 민중운동의 구도를 차용해 자신들의 수사 방어를 정당화시켰다. 조국 일가, 윤미향, 이재명 등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피해자이고, 권력에 맞서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한 저항운동이라는 도식이다. 임기 평균 50%를 넘는 지지율의 문재인 정부, 21대 총선에서 163석을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악화시키거나 회피한 각종 사회 의제를 두고서도 기득권의 저항으로 책임을 돌리곤 했다.

조국, 윤미향, 이재명 등의 수사와 재판을 방어하는데 사용되는 사회개혁 담론의 결론은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물으며 상대는 악마화하고 있다. 보수 정치 세력의 공생 관계야 근래의 일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사회운동 일각의 동조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들이 저항운동의 오래된 도식을 차용하면서 사회운동의 독자적 영역은 축소되었고, 대중의 조롱은 사회운동 전체를 향하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운동 일각의 태도는 조국 일가, 이재명이 저지른 사회적 비위의 쟁점을 법률 위반 여부로 국한시키며 사회 구조의 문제를 다룰 기회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조국·이재명 구명운동에 다름 아닌 검찰공화국·검찰독재론의 반작용은 ‘상식’, ‘공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는 것이 되는데 그 안에서는 예를 들면 조국 일가의 비뚤어진 욕망이 비롯하게 된 한국 사회의 입시구조와 학벌·직업 서열이 논의될 공간이 없다.

사회운동 일각이 검찰독재론을 외치는데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운동 전반이 그간 외쳤던 구호와 정책을 반성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사회운동은 검찰개혁·언론개혁·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을 외쳤다. 사회운동 세력이 제기했던 각종 개혁 담론은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입안되었으나 그 방향과 내용은 충실히 채

워놓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이 이니셔티브를 취한 검찰개혁의 방향은 앞서 다뤘듯 정권 인사를 향한 수사기소의 축소, 그리하여 기득권층의 보호였다. 문재인 정부가 다뤘던 다른 개혁 담론들 역시 구체적 전략이 부재했던 탓에 역효과를 내거나 방향을 상실했다. 그러나 사회운동 내에는 개혁 담론에 합의된 전략, 전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세력의 혼돈, 혹은 반동에도 전면적 비판을 제기하지 못했고, 민주당 세력과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득권세력이 스스로를 피해자-저항자로 가짜 정체화하는데 가담하는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력들은 2016-17년 촛불을 소환하여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 극우적 경향을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사회운동에도 선택의 시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구호 아래 합종하는 것은 사회운동의 후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2016-17년 이후의 혼란과 실패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운동에서 제기해온 각종 구호, 요구부터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⁸⁾. 무엇보다 조국의 강, 이재명의 강을 건너지 못한 세력과 한 자리에 서서는 안된다.

4.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비판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정부의 기조로 삼고 있으나 그 ‘자유’는 자유주의의 ‘자유’가 아닌 하이에크·프리드먼 등 보수주의의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공급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은 통화주의와 ‘세의 법칙’ 언저리에 있다. 모두 현대의 주류경제학에서조차 경험적으로 논파 당한 이력이 있는 경제이론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색깔론에 편승한 지지율 정치에 골몰한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의 기조에 맞춰 법인세, 부동산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8) 전국민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의제가 일례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번 겨울 난방비가 오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대중추수적인 사회운동 일각은 전국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난방비 상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예견되어 있던 문제다.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는 필수재이기는 하나 제약 없는 사용이 가능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현금 지원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전쟁을 먼 나라의 문제로 감춰 두는 효과도 갖는다. 손을 놓고 있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현금을 배포하자는 대중추수적 구호를 제출하는 대신, 난방비 상승을 경고하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방안을 도모했어야 했다. 가스요금의 일률적 인상 대신 누진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2조 원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2022년 영업 이익, LNG직수입사에서 가스공사로 이전된 손실도 다뤄야 했다. 무기지원을 막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활동도 중요했다. 이 점에서 전국민 에너지 재난지원금 요구는 진보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각종 세제를 일제히 인하하고 나섰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대기업 표적 감세다. 흔히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발하기 위해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감세 근거자료에서는 법인세를 인하의 혜택의 75~82%가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소개한다⁹⁾. 또한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선택적 근거와 달리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논쟁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1.3 부동산 대책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주택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분양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레버리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도 시세차익을 추구하라는 투기적 지침이다. 게다가 1.3 대책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구원하려는 의도의 맞춤형 대책이라는 점에서도 문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대응은 극우적 공격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을 들어 노동운동의 명분을 공격하는 이중적 형태를 띤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내걸고 사문화된 자율점검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1990년대 초 전노협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전노협 소속 사업장에 이뤄졌던 당국의 업무조사를 떠올리게 한다. 게다가 국정원과 검찰, 보수언론이 합작하여 민주노총에 공안몰이 까지 자행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며 내비친 노동3권을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 역시 프랑스의 르 사플리에 법(1791), 영국의 단결금지법(1799)에 견줄 만하다. 현재 민주노총을 향한 정권의 탄압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개인 대 개인의 계약 관계로 다뤘던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낡은 자유주의 사상(현재의 보수주의)에 기댄다. 현대적 자유주의에 크게 미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경제관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 표준과도 어긋난다.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 표준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권의 태도는 대통령이 입에 담은 ‘자유’의 가치가 대단히 퇴행적이며 이율배반적임을 보여준다. 노총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협상력을 저해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노총의 노동대표성을 포함한 전후 세계질서의 퇴조라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은 노동자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목표를 담고 있되, 극우이념적 공격과는 사뭇 다른 형태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직무성

9) “법인세 인하의 투자 고용 기대효과, 여러 실증연구결과서 나타나”, 기획재정부, (2022.7.2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3912>

과급제를 제시한다. 직무급을 통한 직무별 임금 기준 마련은 기업 내 격차와 기업 간 격차의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임금제도안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연공급제가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늘린다는 주장의 근거가 미흡하다. 한국에서 연공급을 시행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노동자는 전체의 15%가량¹⁰⁾이고, 이들 중에서도 연공급 외의 임금체계를 택한 사업장이 많다¹¹⁾. 나머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미 근속·경력에 따른 보상이 미미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¹²⁾.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일부 사업장의 연공급을 해체하는 것은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총노동시장 내지 산업의 범위에서 개별 사업장 단위로 축소시키는 제한적 해법에 불과하다. 둘째, 정부의 직무성과급제의 방점은 직무급이 아닌 성과급에 있다는 점이다. 성과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명분과 달리 기업 내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불능력에 따른 기업 간 임금 격차도 필연적으로 확대시킨다. 셋째, 노동자 계급의 조직력·협상력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직무급제는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임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임금형태보다 협상력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성과급제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노동의 협상력이 약해지길 바란다. 또한 직무급제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직무의 난이도와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누가 평가할 것인지에 있다. 따라서 협상력이 담보되지 않는 직무급제는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무급제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된 노동, 특히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재생산노동의 저임금체제를 고착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공세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대표성을 자임하고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고 나설 필요가 있다. 초기업 교섭, 단결권의 확대는 전 조직적 과제로 결의해야 한다.

10)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에서 5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수는 2,730,321명이다.

11) 2022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300인 이상 사업체 2,991개 중 호봉제를 적용하는 사업체는 54.6%다.

12) 2022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300인 이하 사업체 1,560,181개 중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체는 61.2%다.

5. 기업 유치·토건 사업에 몰입하는 전라북도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전주시 등 도내 주요 단체장이 교체되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새 단체장들은 기업 유치와 토건 사업에 발전의 비전을 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대한방직 부지, 종합경기장 개발을 공약했으며 취임 이후 개발 사업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전라북도는 대기업 유치를 주요 도정 목표로 삼으며 기업유치지원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전략은 과거와 같이 노동의 양보, 기업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라북도는 기업 유치를 위한 노·사·정 선언을 노·사 단체에 제안하는 등 노·사·정 관계를 기업 인센티브의 하위 파트너십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가 동원적 성격으로 운영되어온 데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전라북도의 의지와 능력을 초월하는 쟁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의적 국가 재구조화의 일부로서 지방 분권·자치 제도가 확장되었고, 지방 간 격차도 마찬가지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전략은 사실상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인센티브 정책밖에 없지만,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닥을 향한 경쟁’이 될 뿐이다. 특히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는 실정에서 장기(long-run)를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지방 투자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동안 기업 유치 전략 결과로 전라북도에 들어온 기업이 적절한 조건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군산형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이다. 군산형일자리 of 가장 큰 문제는 협약 내용에서의 노동권 제약보다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산업 계획의 현실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래 계획에 따르면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의 기업이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하고 1,704명을 고용해야 하며 24만대의 EV SUV, 버스, 트럭, 화물차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군산시가 2022년 9월에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806억 원이 투자되었고 고용은 466명, 생산은 1,649대 이루어졌다. 2024년이 도래한다 해도 목표치만큼의 고용, 생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명신은 곧 위탁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지만 내용은 의심스럽다. 명신은 중국

바이튼 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바이튼 사가 채무 위기를 겪고 있어 무산되었다. 이후에 패러데이퓨처스 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불투명하다. 패러데이퓨처스 사도 바이튼 사처럼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업체이고 패러데이퓨처스의 CEO가 2019년 10월 15일자로 미국에서 파산신청을 한 전력이 있다. 또한 패러데이퓨처스는 불확실한 공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10월 초, J캐피털 리서치는 패러데이퓨처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험프드에서 전기 자동차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명신이 생산한 1호차는 대창모터스의 다니고벤 제품이었고, 이 다니고벤은 중국 모델이다.

에디슨모터스도 SKD 형식의 중국산 버스를 조립·판매해왔고 차량 제작, 생산 기출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고 현재 군산 공장을 포함하여 회사 자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이다.

군산형 일자리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미 국비, 지방비 지원을 받았으며 알려진 바로는 에디슨모터스는 지금 군산 공장을 매각해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군산형 일자리는 지역 주류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훼손시킨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군산형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드는 전라북도의 현실 앞에서 기업유치를 지상 과제로 삼는 지방 정치 세력의 합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동·산업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공공·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군산형 일자리는 토대 없이 외형만 만들려는 시도였다.

앞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침체를 놓고 지역 기득권 카르텔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부흥시켜야한다는 여론을 확산시키며 여기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낙인 찍을 것이다. 오히려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용한 사업에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전라북도 발전을 가로막는 범인임을 지적하고 드러내는 노동·사회운동의 대응이 요구된다.

전라북도 노동·사회운동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격차의 문제를 각 지역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접근 자체를 부정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역 간 '바닥을 향한 경쟁'은 결국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기업유치에 있어서도 지역의 인센티브 정책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수도권권의 패널티 정책이다. 지역으로 기업 이주를 장려하더라도 그 유인책은 중앙 정부의 거시적 산업정책에 맞물려 진행되어야 하며, 각 지역별로 '되는 대로' 식의 기업 유치 전략은 산업의

지속성, 발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연결되는 맥락에서 기업 유치에 앞서 노동 표준 도입이 필요하다. 전라북도의 빈일자리율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일자리 부족은 정확하게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이다. 전라북도의 기업 유치 전략을 비판하는 노동·사회운동의 과제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전체 노동자의 최저 노동조건을 상향시키는 압력을 형성하는데 있다. 2022년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 제정에 근거해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전라북도노동정책기본계획」은 개입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식·조용화. (2022). 2022년 정세전망. 전북노동정책연구원.

강선주. (2022).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국제정치경제적 함의와 전망.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2(17).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정성·임웅지·오강현·최열매·김윤경·이재진. (2022). 우리나라의 물가-임금 관계 점검. BOK이슈노트, 2022(26). 한국은행.

김훈·신현열·유종민·김보성. (2008). 금융증권화의 리스크와 대응방향. 한국은행.

임영일. (2017).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5주년: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연대와 소통, 2017(3).

한국은행. (2023).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동향, 정책대응 및 평가. 국제경제리뷰, 2023(1). 한국은행.

IMF. (2022). World Economy Outlook.

_____. (2023). World Economy Outlook Update.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박영민(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1. 총평

2023년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빙자한 노동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 한해의 화두는 ▲노동시간 관리단위 변경을 통한 장시간 압축노동(1주 69시간) 허용, ▲ 노동자들을 세대별로 갈라치기하고 결과적으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임금체계 개편, ▲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시 추진 ▲ 양대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 파견 허용 대상 업무 확대 ▲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시도 등이다.

노동시간 관리단위 변경을 통한 장시간 노동 허용과 파견 허용 대상 업무 확대 등의 친기업적 노동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정부의 이와 같은 시도에 걸림돌이 될 노동조합을 가장 큰 저항세력으로 간주하고 기존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낙인찍고 정부가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함으로써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여론 지형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엿보인다.

이하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① 공무원 교원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 도입, ②교원 소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병행 기능, ③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장근로 12시간 한도 적용, ④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 개정, ⑤ 휴게시설 설치의무와 기준 신설, ⑥건강 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정 신설, ⑦ 특수형태근로자 전속성 요건 폐지, ⑧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⑨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휴여 지급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은 주요 핵심내용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2. 법령 개정 내용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¹⁾

(1)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 기존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음.
-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무급전임자임을 명확히 하면서도(제7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제7조의2, 제7조의3).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²⁾

(1)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 기존에는 교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지급을 금지하는 등 민간부문과 달리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음.
- 이에 교원 노동조합 업무 전임자가 기본적으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무급전임자임을 명확히 하면서도(제5조),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인원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교육부장관 등 교섭상대방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및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함(제5조의2, 제5조의3).

1) 시행일 : 2023. 12. 11. (개정일 : 2022. 6. 10.)

2) 시행일 : 2023. 12. 11. (개정일 : 2022. 6. 10.)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청심사 청구 가능

- 기존에는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교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삭제함(기존 제13조 삭제).

3) 근로기준법

(1)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적용³⁾

- 2018. 3. 20.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제53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되었음(부칙 2조).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됨.
- 단,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하여 1년의 계도기간(2023. 1. 1. ~ 2023. 12. 31.)을 부여함.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충분한 시정기회를 제공함.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및 자격요건 정비

- 기존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 요건이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위원선거인의 선출에 관한 투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

3) 시행일 : 2023. 1. 1. (개정일 : 2021. 5. 18.)

4) 시행일 : 2022. 12. 11. (개정일 : 법 2022. 6. 10 / 시행령 2022. 11. 8.)

기명 투표 요건을 규정함(법 제6조).

- 기존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으나, 별도의 근로자 추천 없이도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록 개정함(시행령 제3조).

5) 최저임금법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9,620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

- 주 40시간 기준 월급 최저임금(월 환산액) 2,010,580원(월 209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23년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2018. 6. 12.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에서는 위 항목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비율(매년 단계적으로 축소)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초과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음. 2023년까지 순차 축소되어 2024년에는 전부 산입됨.
-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은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 2023년에는 상여금(준하는 것 포함)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100,529원=9,620원×209시간×5%)를 초과하는 금액,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106원=9,620원×209시간×1%)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⁵⁾

○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장비 등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출퇴근에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제18조 제1항 제1호),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사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8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

5) 시행일 : 2022. 7. 12. (개정일 : 2022. 1. 11.)

1항 제2호).

- 한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실제 인증이 취소되기 전까지 모회사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수를 계속 포함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부담금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제3항 단서).
-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제1항).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1) 도급인의 위생시설 등 협조 의무 위반 시 제재 수단 변경⁶⁾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로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의무를 부담함(법 제64조 제1항 제6호).
- 다만,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이와 같은 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였음. 그러나 이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어 1차 위반시 500만원 이하, 2차 위반시 1,0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법 제175조 제3항 제2의2호, 시행령 별표 35 제4호 토목).

(2)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등 규정 신설⁷⁾

○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명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6) 시행일 : 2022. 8. 18. (개정일 : 2021. 8. 17.)

7) 시행일 : 2022. 8. 18 (개정일 : 법 2021. 8. 17. / 시행령 2022. 8. 16. / 시행규칙 2022. 8. 18.)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함(법 제128조의2). 만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음(법 제175조 제3항 제2의3호, 제6의2호).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 규정 및 단계적 적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함. 이에 따라 ▲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과 ▲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이 됨(시행령 제96조의2).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더불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매차수별 1,500만원으로, ▲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내용 위반 1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이상 시 500만원으로 정함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정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매 4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정함(시행령 제118조 제1항).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

- 시행규칙에서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함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 21의2)

- 적용 대상 사업장 중 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 8. 18.자부터, ②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의 경우 2023. 8. 18.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음(시행령 부칙 제2조).

(3)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 규정⁸⁾

-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하여 '직업성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 규정이 마련됨(시행령 제7조).

(4)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의 체결 주체·시기·조치 의무·지도기준 규정⁹⁾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주체 변경 및 지도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의 적절한 조치 의무 명시
-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도계약 체결 시기 지정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명확화

(5)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변경¹⁰⁾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8) 시행일 : 2022. 8. 18. (개정일 2022. 8. 16.)

9) 시행일 : 2022. 8. 18. (개정일 : 법 2021. 8. 17. / 시행령 2022. 8. 16.)

10) 시행일 : 2023. 1. 1. (개정일 : 2022. 8. 18.)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으로 변경함(시행규칙 제28조, 별표 5 제2호)

개정 전	교육 내용		시간
개정 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 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개정 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 절차		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1시간

(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제출, 제공 등의 대상 확대¹¹⁾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 제출 · 제공의 대상이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까지 확대됨(시행규칙 부칙 제9조 내지 제11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1) 건강손상자녀의 업무상 재해 관련 규정 신설

-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제36조 제1항, 제91조의12 신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 이후'로 함(제91조의13 신설).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급여 및 장례비의 산정기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장례비 최저금액'으로 함(제91조의14 신설).

11) 시행일 : 2023. 1. 16. (개정일 : 2019. 12. 2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및 노무제공자 정의규정 도입¹²⁾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고 관련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함(제91조의15 제1호 신설 및 제125조 삭제).
-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제91조의15 제5호 및 제6호 신설).
-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제91조의18 신설).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0 제2항 신설).
-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1조의21 신설).
- 개정법률의 공포 이후 시행 전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특례를 둠(부칙 제8조).

(3)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¹³⁾ 범위 확대¹⁴⁾

-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12)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6. 10.)

13) 2023년 1월 현재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는 용어는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음.

14) 시행일 : 2022. 7. 1. (개정일 : 2022. 3. 15.)

9) 고용보험법

(1)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¹⁵⁾

- 기존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기간 전까지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용역 또는 노무의 제공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어려울 수 있어 현실적으로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기 힘든 문제가 있었음.
- 이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를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대상에 포함함(제77조의4 제1항, 제77조의9 제1항).

(2)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에서’ 고용보험 적용 제외됨을 명시¹⁶⁾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함(제10조 제1항 제2호).

(3) 법 적용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 확대¹⁷⁾

-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제10조의2 제2항).
- 법 시행 전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이 법 시행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 시행 전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보험료 반환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피보험자격은 무효로 봄

15) 시행일 : 2022. 12. 11. (개정일 : 2022. 6. 10.)

16) 시행일 : 2022. 12. 31. (개정일 : 2022. 12. 31.)

17)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12. 31.)

(4) 자영업자인 동시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인 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기준 법에 규정¹⁸⁾

-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5)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중 근로일수 기준 변경¹⁹⁾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

(6)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여부 결정 기준²⁰⁾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43조의2 제1항).
-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함(제43조의2 제2항 본문).
- 다만,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대신(제43조의2 제2항 단서),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18)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12. 31.)

19)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12. 31.)

20)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12. 31.)

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제49조 제2항, 제77조의3 제6항 제2호, 제77조의8 제6항 제2호).

- 법 시행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함.

(7)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에의 유·사산휴가급여 지급²¹⁾

- 기간제근로자·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제76조의2 제1항).
- 법 시행 당시 유산·사산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8) 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 관련 규정 신설²²⁾

- 예술인·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의2 제2항 제3호, 제77조의6 제2항 제3호).
- 법 시행 전 15세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개시한 경우, 법 시행 전까지의 피보험자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6조 제1항).

(9) 10인 미만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법 적용²³⁾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일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였는데(제10조의2 제1항), 그 적용 범위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함.

21)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12. 31.)

22)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12. 31.)

23) 시행일 : 2023. 1. 1. (개정일 : 2019. 1. 15.)

10)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 확대²⁴⁾

-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기술자, 유통 배송기사 등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및 골프장 캐디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추가함(제104조의 11).

(2) 출산 전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규정²⁵⁾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현재 피보험자가 아니나 종전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거나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출산전후급여 등의 금액은 그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제104조의9 제1항·제3항 및 제104조의16 제1항·제3항)

(3)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정당한 이직 사유 신설²⁶⁾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함
- 피보험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 중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의 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등²⁷⁾(제101조 제3항, 제4항, 별표 2의2, 별표 2의3 참조).

24) 시행일 : 2022. 7. 1. (개정일 : 2022. 6. 28.)

25) 시행일 : 2022. 12. 11. (개정일 : 2022. 12. 6.)

26) 시행일 : 2022. 7. 1. (개정일 : 2022. 6. 30.)

27) 기존에 존재했던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내용상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근로자와는 다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추어 용어 등이 변경됨.

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관련 규정 정비²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제48조의6 제2항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의 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의 노무제공자가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휴업 등 신고 제도를 신설함(제48조의6 제4항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되, 사용종속관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제48조의6 제6항 신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 산재보험료의 원천공제, 산재보험료 원천공제·납부를 위한 전용 계좌 개설 등 보험행정 관련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함(제48조의7 신설).

(2)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²⁹⁾

○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 종전에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가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그 사업주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요건을 완화함(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이에 따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다른 월 보수액 및 재산·종합소득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28) 시행일 : 2023. 7. 1. (개정일 : 2022. 6. 10.)

29) 시행일 : 2023. 1. 1. (개정일 : 2022. 12. 14.)

12) 영유아보육법

(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불응 시 처벌³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법 제14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1항).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의2, 제44조의2, 제44조의3). 그러나 실태조사 자체에 불응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 외 경제적 제재가 없어 이행강제력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실태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불응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14조의2, 제56조 제1항).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일몰 조항에 따른 안전운임제 운영 중단³¹⁾

- 화물차주에 대한 적절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 1. 1.부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8. 4. 17. 개정)
- 그런데 2022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안전운임제 관련 일몰 조항이 삭제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운임제 관련 법규정의 효력이 2023. 1. 1. 부로 상실되었음. 안전운임제의 지속 시행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데, 2023. 1. 현재로서는 국회에서의 논의가 멈춰있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함. 앞으로 안전운임제가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사라질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관한 국회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음.

30) 시행일 : 2022. 12. 11. (2022. 6. 10.)

31) 시행일 : 2023. 1. 1.

1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등³²⁾

-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우주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우주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승무원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의 일환으로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 산업법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 사망시 고용허가의 제한³³⁾

-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³⁴⁾

(1) 고용허가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건을 추가

-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협약서를 제출해야만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함.

32) 시행일 : 2023. 6. 11. (개정일 : 2022. 6. 10.)

33) 시행일 : 2022. 12. 11. (개정일 : 2022. 6. 20.)

34) 시행일 : 2023. 2. 3. (개정일 : 2022. 8. 2.)

(2) 취업활동 기간 연장시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필요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이유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함.

1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³⁵⁾

(1)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취업활동 범위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에게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제23조 제2항 제1호, 별표 1의2 제24호 파목). 인구감소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취업활동으로 단순노무행위도 할 수 있음(제23조 제3항 제1호 단서).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민주노총 법률원)
-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열린노무법인)
-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35) 시행일 : 2023. 1. 1. (개정일 : 2022. 12. 27.)

○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 요약

관련법률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4대보험	2023년 4대보험요율변경
소득세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직접비밀투표) 신설 및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규정하여 대표성 강화
공무원,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①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도입 ②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	①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태아)를 근로자로보아보험급여청구권 인정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요건을 폐지하고 특고및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인정기준 등을 규정 ③플랫폼 노무제공 특성을 감안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 신고, 자료제공 협조의무 등 부여 ④유통배송기사, 택배 자·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하여 2022.7.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산업안전보건법	①사업장 내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②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직접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①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마련, 작업장 내 독성물질 8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②섬유제품제조업등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 강화 ③물질보건자료 작성 제출제공 등 대상 확대 ④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변경 ⑤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⑥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 곤란한 경우 이동식 크레인 탑승 예외 허용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①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때 출산전후급여및 유산·사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②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로 범위 확대 ③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네거티브 방식 전환 ④고용촉진장려금 금액 지급방식 개편 ⑤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코로나19 등 장기간 결친 위기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시점을 탄력적으로 청할 수 있도록 개선

관련법률	주요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①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미납하여 독촉하는 경우, 납무의무자의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 고지 가능 ②보험사무 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사유 법률 명시 및 인가 제한기간 차등 설정③예수인 및 노무제공자가 본인의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완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 ②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③감염병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으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④사용자가 모든 외국인근로자(농어업5인 미만 개인사업장 포함)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가입 약약서 제출시에만 고용허가 발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①퇴직금 및 퇴직연금 수령자모두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 의무화 ②(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상시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퇴직금을 공동기금(근로복지공단 적립)으로 조성 후 연금 또는 일시금수령 ③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하는 300인 이상 기업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④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 제재 규정(과태료 1천만원이하) ⑤(퇴직연금 사전운용제도, 디폴트옵션) 퇴직연금(DCIRP)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 운용하는 제도 도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①장애인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구입 사용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②자회사형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준 미치지 못하는 경우 모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자회사 고용 장애인수를 포함할 수 없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

주69시간제는 과로사범

김음표(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자기 자식의 일이라면 이럴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2020년 10월 12일 27세 고 장덕준씨는 과로사로 사망했다. 쿠팡 철곡물류센터에서 숨지기 전 주 62시간을 일한 결과다. 과로로 아들을 잃은 박씨는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하며, “장시간 노동이 건강한 20대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및 불규칙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에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과로사 조장법도 아닌, ‘과로사범’이다.

○ 외신도 주목한 ‘KWAROSA’, 과로사회 대한민국

호주 ABC 방송사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 입법안 발표 후, 한국의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과로사’를 영어 발음 그대로 표현하여 보도했다. 미국 CNN 방송 역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노동시간에 직면해 있으며 과로사 (gwarosa)로 인해 매년 수십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과로사한 노동자는 모두 2503명’이다. 매년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통계 산재 사고사망자의 6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이다.¹⁾ 김현주 이화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 용의원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중 뇌심혈관계질환 산재 사망자수를 파악했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과로사 사례를 찾기 위해 인사혁신처(공무원), 국방부(군인),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수협중앙회(어선원)

는 2019년 5월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105호를 통해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수년동안 하는 경우 뇌졸중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2배까지 증가하며, 우울증을 1.7배 증가시킨다고 설명한다. 대한민국(2021년 1927시간)은 OECD 국가의 평균인 1617시간 보다 무려 39일 더 일한다.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이 일하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한민국,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과로하고 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사람을 ‘기계’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파괴와 건강권, 생명권을 훼손하는 과로사법이다.

근로시간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법률용어 사용)

○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²⁾

근로시간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시간을 의미한다. 이때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수행의 의무정도, 시간과 장소의 제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시간 판단이 모호한 주요 사례에 대한 구체적 판례의 판단

휴게시간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로시간 제외)
대기시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 (근로시간 해당)
교육시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근로시간 해당)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받는 교육 (근로시간 제외)
회식	노동제공과 관련이 없어 근로시간에서 제외 (단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판례 존재) ³⁾

로부터 2017~2021년까지의 과로사 산재현황을 자료제출받아 분석하였음. 이때 용의원실 최승현 보좌관은 1인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노동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을 밝힘. (2022.07.15. CBS주말 뉴스쇼 발췌)

2) 주52시간제 바로알기 발췌 (2021.07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3)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주 69시간제는 무엇인가?

○ 현행 노동시간 제도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주 40+12시간제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공식적인 법적 용어인 것은 아니지만, 노동시간을 이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를 가리켜 통상 ‘주 52시간 근무제’로 불리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기본적으로 1주의 노동시간을 주52시간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주 69시간(최대 80.5시간)제)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구분	현행	제도 개편안 추가 선택지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12시간 x 4.345주) (연장근로 총량 100%)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 평균 12시간	주 평균 10.8시간	주 평균 9.6시간	주 평균 8.5시간

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판 2016두 54589)

정부는 현재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가 길어질수록 전체 연장 노동시간 허용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또한 사업장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의 입장에 따르면 노동시간 등 주요한 노동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노동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 법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자 건강권 보호강화

현재 주당 52시간까지로 노동시간이 제한 되어 있는 것을 ‘월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4주를 한 단위로 통합해 ‘1개월에 208시간’의 한도가 설정되는 방식이 된다. 다만 이 경우 짧은 기간 동안 주 64시간~69시간의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① 근무일간 11시간 휴식 또는 ② 휴식 없이 주 64시간 상한 선택권을 제시했다. 즉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면 주 69시간, 휴식이 없다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겠다는 것이다.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또한 정부는 ‘노동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공약집⁴⁾을 살펴보면, 1)저축 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사용, 2)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공약집에서 정의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이를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그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연장노동에 대해 금전보상을 시간보상(휴가)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의 비판적 견해

○ 주 69시간(최대 80.5시간) 장시간 근로

정부는 기존 1주 최대 12시간 단위로 제한하던 연장노동시간을, 월/분기/반기 등 총량으로

4)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 힘 정책공약집

계산하여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정부안대로라면 노동자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게 되면 하루 24시간 중 13시간이 남으며,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하면 남은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다고 가정했을 때 1주 최대 노동시간이 주 69시간, 휴일이 없다면 주 80.5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24시간-11시간(근로일간 연속휴식)-1.5시간(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휴게시간) = 일 최대 11.5시간

일 최대11.5시간X6일=주69시간

일 최대11.5시간X7일=주80.5시간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하여 근무일간 11시간 휴식을 부여하면 주 69시간, 휴식이 없다면 주 64시간을 상한으로 두겠다는 정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은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다. 과로사 인정기준을 근로시간 상한으로 잡은 정부안을 비추어 보면, 과로사하기 딱 직전까지만 일하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이 없을수록 장시간 노동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동시간만 늘어날 뿐 이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하고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마저 적용받지 못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그 수준이 더 심각하다. 현장에서 15~16시간씩 높은 노동강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몰아서 일하라’는 것은 초장시간의 압축노동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까지 앗아가고 있다.

○ 근로자대표제는 결국 사용자 재량 확대

근로자 대표5)제도 역시 의미 없기 마찬가지이다. 전체 노동자의 약 90%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일하며 전체 노동자의 약 80%에 달하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근로자대표제의 정비를 예고하면서도,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활동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미비하며, 사용자의 개입과 방해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다. 즉 사용자의 개입과 방해, 화유, 포섭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근로자대표의 대표성과

5)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보아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진정한 이유

정부는 연장수당을 모아 ‘제주 한 달 살기’와 같은 장기휴가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직장갑질 119의 산출식⁶⁾을 빌리자면, 한 달 휴가가 가능하려면 22일치 {30일 - (주휴일+휴무일 총 8일)}의 근로시간인 176시간분 (8시간 × 22일) 의 연장근로수당을 적립해야 한다. 연장근로를 하면 1.5배 가산되므로, 최소 117시간 (117시간 × 1.5)의 연장근로를 해야 22일치인 176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이 적립되는 것이다. 이때 한 달의 휴가가 발생한다. 117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려면, 하루 12시간 (법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4시간)씩 30일 (4시간 × 30일 = 120)이나 일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노동자가 하루 12시간씩 30일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까지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을까?

정부는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에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다수 노동자의 진의를 파악한 것인가 의문스럽다. 노동자가 장시간 근로를 원하는 경우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정상근무 기본급여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 아닌가. 연장수당 대신 휴가를 받는 것이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것인지,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현 상황을 토대로 한 명확한 판단이 절실히 보인다. 맘 편히 쉬려면 소득도 보전되어야 한다.

○ 현실은 ‘있는 연차’도 못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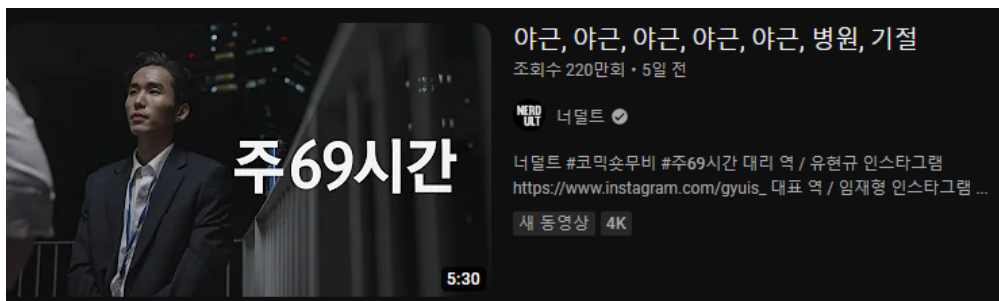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서 공개한 설문조사⁷⁾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 동안 직장인 80%는 연차휴가를 15일 미만 사용했다. 20대 노동자(176명)의 절반인 55.1%는 연차휴가를 1년간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과 상급자의 눈치, 직장 내 분위기와 조직문화 등을 꼽았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거나 5명 미만 사업장, 낮은 직위, 낮은 임금의 노동자일수록 연차휴가를 적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조차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 상황에선 노동시간저축제도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설령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일이 많을 땐 노동자들에게 과로를 요구하고, 적을 땐

6) 윤석열정부 <몰아서 일하기> 7문 7답 (직장갑질 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7)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이달 3일부터 한주간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 (95% 신뢰수준)한 결과

노동자들의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휴업을 외칠 것이다. 또한 가산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주 69시간’ 재검토해야



▲ 유튜브 채널 ‘너덜트’에서 업로드 한 주69시간 코믹сут무비

공개 5일 만에 조회수가 200만회를 육박한 유튜브 코믹сут무비가 있다. ‘주 69시간’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의 직장인들의 삶을 그린 영상이고, 네티즌들은 “하나의 과장도 없는 진짜 리얼”이라는 분노 섞인 공감을 표했다. 주 69시간을 홍보하는 정부의 주장과 같은 대사를 하는 사원과, 대리의 입을 빌려 현실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의 내용을 보며 “현시점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한다. 회사는 강도 높은 야근을 강요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아프고 기절해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직장인의 비애를 그대로 보여준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편 입법안은 과연 노동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반영했는지의문이 든다. 대한민국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 국가이다. 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도는 업무폭증 등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만을 유연화하려는 이번 개편안으로는 실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를 일체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이 공감을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6.25 전쟁 중에 제정되었다. 제정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1일 8시간 근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과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⁸⁾ 전쟁통에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8) 오마이뉴스 사회연재 노동시간 개악안의 함정 2화 ‘놀랍다, 한국전쟁 중 만든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발췌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유성규 공인노무사 2023.03.30.)

과 생명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의 개편안이 20년 전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개악 시킨다는 ‘주 69시간제는 시대역행’의 메시지는 타당해 보인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좀먹고 일 생활의 균형을 훼손하는 과로사법 주 69시간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02

전북노동브리프



칼럼

- 다음을 빼앗긴 소희에게, 다음 소희는 없을 거라 말하기 위한
- 견고한 성(城)을 깨부수는 노동자들의 여정

칼럼

다음을 빼앗긴 소희에게, 다음 소희는 없을 거라 말하기 위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2022)와 영화 <다음 소희>

조용화(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전북노동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수탁받아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이하 특성화고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놓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보고서로는 2006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교육훈련이 아닌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되어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장실습의 현재를 진단하고, 실습생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얼마 전 개봉한 영화 <다음 소희>와 함께 특성화고 실태조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뇌출혈 사고, 울산 금영ETS 공장 자붕 붕괴 사망,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망, CJ 진천공장 자살, 성남 토다이 자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제주 생수업체 사망, 여수 요트 잠수작업 사망, 그리고 <다음 소희>의 바탕이 된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엘비휴넷) 실습생 사망 사건까지, 현장실습생이 중대 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사고는 정부-교육부가 내놓은 그간의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되풀이되고 있다.

전주 LG유플러스고객센터에서의 사건이 모티브가 된 영화지만 <다음 소희>는 사건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영화는 열여덟 살 소희의 삶을 긴 호흡으로 묘사한다. 첫 장면은 춤을 추는 소희의 모습이다. 소희는 탈진하기 직전까지 좋아하는 춤을 추고,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드는 고등학생이다. 드디어 ‘대기업이나 다름없는’ 콜센터에 학생을 보내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선생님 앞에서 소희는 비록 전공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기뻐한다. 하지

만 한껏 기대하며 출근한 현장실습지 콜센터의 분위기는 소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곳에서 하게 된 일은 인터넷을 끄겠다는 고객들을 어떻게든 설득해 마음을 돌려놓는 ‘해지방어’다.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숨 막히게 들어차 전화를 받는 곳에서 소희는 욕을 들어도 웃으며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을 배운다. 소희는 힘들어하기도 하고 적응해보려도 하지만 여과되지 않는 폭력과 비난과 죽음 앞에서 마음을 닫아간다. 학교 취업률에 누가 될까 절대 그만두지 말 것을 요구하는 선생님과 소희의 어려움을 애써 무시하는 부모님과 각자의 삶을 지탱해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 친구들, 사람을 실적과 그래프로 환산하는 회사와 부당함을 물어줘야 하는 자괴감 사이에서, 어디서도 도움받지 못한 소희는 조용히 저수지로 걸어 들어간다.



영화에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교육훈련과정이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와 산업체 등 각 기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공에 적합한 교육을 현장에서 받는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현장실습생들은 위험하거나 장시간 노동해야 하는 단순 반복 작업에 투입된다. 이러한 방향성은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논의가 즉각적인 노동시장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직업주의에 치중되어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습 사업체의 질과 노동환경은 악화되어왔다.

특성화고 실태조사는 여기서 출발한다. 왜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문제는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는가? 왜 소희(들)의 삶은 현장실습을 나간 뒤 이어질 수 없었는가? 실태조사는 한국의 중등직업교육이 직업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직업주의적 교육관에서는 기초학습능력과 인문적 소양의 증진보다 전공 기술교육과 산업현장으로의 연계가 중요하다. 때문에 직업주의적 입장은 고졸 취업을 강조하고 미래보다는 현재의 직업세계에 초점을 맞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을 강조하며, 범용적인 기능보다는 특정 기업에 맞춘 교육과 훈련을 강조한다(임언, 2019). 이에 따라 현장실습제도는 취업률을 높이고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을 노동시장으로 이행시키는 통로로 기능하며, 학생들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능적으로 활용되어왔다. 따라서 그간 정부와 교육부의 ‘대책’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현장실습제도의 실제 목표가 노동력 수급이었다는 점에서, 현장실습제도와 조기취업은 ‘당연한 것’이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소희의 선생님은 소희가 일을 그만두는 것이 후배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한다. 현장실습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학생을 보낸 학교를 기업에서 피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취업률이 떨어져 교육청의 지원이 끊기는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소희는 기껏 대기업에 보내졌더니 사회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는 문제적 학생으로 여겨진다.

특성화고 실태조사는 이러한 직업주의적 직업교육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문주의적·비판적 직업교육의 입장을 토대로 직업교육이 현장실습과 취업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인문적 소양 함양을 추구해야 하며(Dewey, 1916) 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Kincheloe, 1996)이어야 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현장실습제도 관련 법·제도·사례 분석, 관계기관이 생산하는 특성화고 관련 2차자료 분석, 현장실습을 둘러싼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접조사를 통해 직업주의적 직업교육 위에서 이어져 온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실습 전후의 생애경험이 어떤 경로를 그리는지 확인하며, 현장실습 청소년들의 보편적 권리를 다루고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한편으로는 소희의 죽음 이후 남겨진 친구들을 생각하게 된다. 영화에서 어떤 친구는 소희의 죽음 이후에도 병역특례 때문에 산업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장시간 노동을 참아낸다. 이번 조사에서 현장실습생들이 채용연계, 병역특례, 학교 평판 등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으로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심층면접에서 위법 사항이 있어도 병역 특례 등 제약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하거나 그만둘 수 없는 사례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다른 친구는 현장실습 중 복귀했지만 중도 복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둔 뒤 인터넷 방송을 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분석 결과 현장실습 참여자 중 24.1%는 도중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산업체의 협약사항 불이행(9.4%), 학교 측의 배치 부적절(6.3%)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도 복귀한 학생 중 38.1%는 학교에서 정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심층면접에서는 현장실습 중 복귀한 학생이 다시 현장실습 기회를 얻기 어려워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며 졸업 전까지 시간을 보내거나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 취업 정책은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통해 취업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사실상 유일한 그 경로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며,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이 취업을 위한 경로가 닫혀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질 나쁜 현장실습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소희와 소희의 친구들과 소희 다음의 현장실습생들이 더 나은 현장실습제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특성화고 실태조사에서는 크게 1. 특성화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2.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3. 특성화고 학생 및 청소년의 지원 제도 확대를 10개 중점 과제와 23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진 3대 핵심 과제로 제안했다.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 중단과 직업교육 정상화,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는 학습권 보장, 실습생 및 청소년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체계 정비,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운영과 조기취업 중단,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장, 학교 노동교육 강화, 특성화고 학생 통계 생산, 청소년·청년 정책에 특성화고 특성 반영, 권리침해 시 구제절차 지원, 연결될 권리 등으로 구성된 제안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현주소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변화를 요구한다.

국제인권기준들은 일관되게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며 차별과 배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정부)는 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고, 학생 신분이라고 이러한 국제 인권기준의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성화고 실태조사와 영화 <다음 소희>가 짚어낸 현실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현장실습생들은 국제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직업교육제도와 5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노동력 수급이란 목적만이 남은 채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규정 아래 반복되는 사고와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소희 다음, 다음 소희가 생겨나고 있다. 소희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 바라는 일을 원하는 대로 배우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지칠 때까지 좋아하는 춤을 추고 바닥에 주저앉아 방금 연습한 춤 영상을 돌려볼 수 있는 세상이 오기까지, 그리고 소희에게 다음의 너는 이제 없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방향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임언. (2019). 학생들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고교 직업교육. THE_HRD_REVIEW, 22(3).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 J. Dewey. (1987), 민주주의와 교육(이홍후 역). 교육과학사(원전출판 1916).

건고한 성(城)을 깨부수는 노동자들의 여정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투쟁에 대하여

황선호(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공인노무사)

성(城)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등 시민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성(城)에는 가까이 갈수록 멀어지는 성이 등장한다. 주인공 K는 성 안의 신분 높은 백작의 초빙을 받은 측량기사다. 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성이 금방 닿을 것처럼 보이는 마을에 머물면서 성에 들어가기 위한 온갖 방법을 다하고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만나야 할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노력해도 K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할수록 성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만 같다. 분명 백작의 초빙을 받은 그는 성에 들어갈 권리가 있음에도 성 안으로 들어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쓸데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쳐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반복하게 한다. 결국 K는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등 시민이 되어 성 밖의 마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다.

카프카가 성(城)을 통하여 비유하고자 했던 것에 대하여는 많은 해석이 있다. 카프카 자신이 우선 이 소설을 끝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해석을 들어볼 기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 때문에 성을 통해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등장하고 분석하고 있다. 누군가는 성이 신과 절대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성이 자아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성이라는 상징물을 통하여 성 안 사람들과 성 밖 사람들을 구분하는 분절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성 안의 사람들은 특권층으로서 성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성 밖의 사람들은 이등시민처럼 그러한 혜택에서 유리되어 그저 허

름한 마을에서 멀지만 가까운 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 밖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저 자신이 성 안 사람들처럼 잘나지 못해서 또는 무능해서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고 좌절할 뿐이다.

우리 시대의 성 밖 사람들 - 특수고용직과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카프카의 소설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 밖 사람들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견고한 성채를 쌓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존재들과 성 밖으로 배제된 존재들이 있다. 그중에서 오늘은 노동자들, 그중에서도 단결하고 싸울 권리를 배제당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다. 소설 속 주인공 K가 백작의 초빙을 받고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는 성채의 밖으로 유리되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바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시대의 이등 시민들이다. 도대체 성 안과 밖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길래 위대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말인가.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성 밖으로 쫓겨내짐을 당했다.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이자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조합원인 노동자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이다. 약속한 인센티브를 미지급한 대리점주에게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벌인 노조 활동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노동자를 성 밖으로 쫓아내면서 든 처벌의 근거는 업무방해, 방실침입, 명예훼손의 죄목이었다. 노동자는 주기로 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대리점 대표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1시간 20분가량 자동차 전시장 출입문을 잠그고 대표실 폐쇄회로 TV에 청테이프를 붙였다. 또한 대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대표의 악행에 대하여 고발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행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단결하여 상당한 정도의 압력을 가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하위법인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성 안의 권력자들이 성 밖의 노동자들에게 허용할 수는 없기에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하여 성 밖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로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단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작은 단체행동만 해도 실

정법으로 처벌당하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을 넘으려는 시도들 - 택배노조와 자동차판매연대의 투쟁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CJ대한통운이 계약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는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업주 범위를 근로계약관계에 한정하는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성 밖의 노동자들을 차별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원청을 지목하지 못하게 하는 성 안 권력자들의 전략에 제동을 가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또한 지난 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의 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판매노동자 5명에 대한 판매용역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였다. 대리점주와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특수고용직 신분에 있는 판매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완벽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대리점주의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와 횡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 사례의 경우에도 짧게는 15년 길게는 20년 넘게 일해온 판매노동자들에게 인보증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사례이다. 노동자 쪽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비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자 판매용역계약 해지 즉 사실상 해고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인보증이 없는 것이 사용자의 계약 해지 사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례 역시 성 밖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해치려는 성 안 사업주의 횡포에 제동을 건 사례이다.

성을 향해 망치를 들자 - 노란봉투법

우리의 현실에서 노동자들을 성 밖으로 자꾸 쫓아내려는 성 안 사람들의 작업은 크게 보아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3단계이

다. 그 3단계 전략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노조파괴 3단계와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특수고용확대	원청의 교섭거부·해태 (원청의 사용자책임 회피)	손배·가압류

위와 같은 노조파괴 3단계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노조법 2조와 3조이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의 범위,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 범위를 넘어선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하면 “불법”, 범위를 넘어선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불법”, 범위를 넘어선 사항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해도 “불법”이 된다. 이렇게 “불법” 낙인이 찍히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노조법 3조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노조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적법한 쟁의행위 범위가 매우 좁은 반면에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매우 넓었다. 다시 말해 노조 활동이 “불법”이 되어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 성 밖으로 쫓겨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자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정상적인 활동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처벌과 손해배상청구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노조법 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쟁의행위의 범위는 확장하고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 범위는 축소하자는 법이다.

성을 깨부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불법” 낙인 찍어 성 밖으로 쫓아내는 그들의 책동에 굴해서는 안 된다.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동자들의 시도를 집요하게 좌절시키는 그들의 논리는 한 가지다. 소위 말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을 위반했으니 노조도 할 수 없고 조합원으로서 한 행동은 불법이니 경찰과 검찰을 만나러 와서 조사도 받고 판사를 만나러 와 재판도 받고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도 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월급이 압류되고 집과 재산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된다. 이는 카프카의 소설 속 주인공 K가 온갖 복잡한 과정과 시도들을 거쳐도, 그리고 온갖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쳐도 결국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

다. 그러한 과정을 겪다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가려던 K가 성 밖 마을에 안주해버리는 것과 같이 노동자들 역시 노동 3권을 누릴 수 있는 성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그만둬 버릴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 성채를 깨부수기 위하여 망치를 집어 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노란봉투법이 그 망치를 들어 올리는 시작이 될 것이다.

03

전북노동브리프



동향

- 2022년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동향

2022년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김연탁(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본 문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

1) 취업자 현황

〈표 1〉 전라북도 2018~2022년 취업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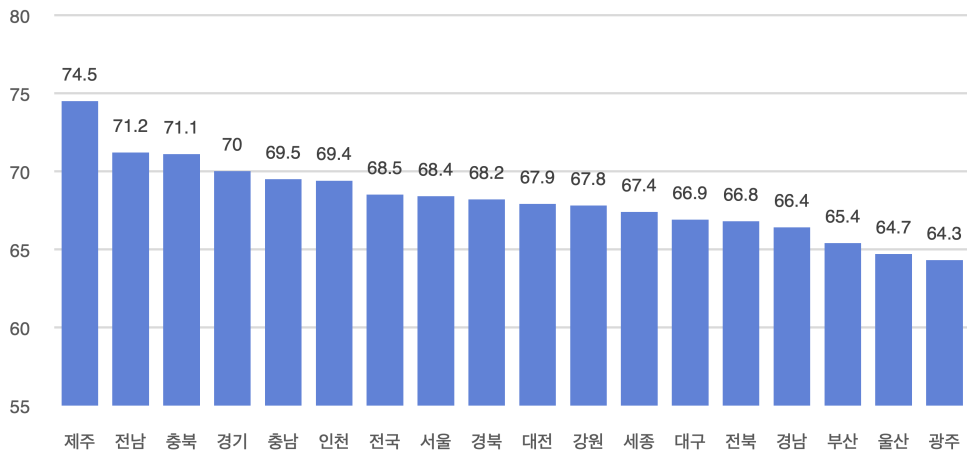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5세 이상 인구		1,569	1,563	1,555	1,555	1,556
경제활동인구		940	953	956	974	992
성별	남성	543	543	541	548	549
	참가율	70.7	70.8	70.9	71.6	71.7
	여성	397	410	414	426	443
	참가율	49.6	51.5	52.3	53.9	56.1
실업자		26	26	24	21	24
실업률		2.7	2.7	2.5	2.2	2.4
청년실업률		10.0	9.3	9.1	5.9	6.6
취업자		915	928	932	953	968
고용률		58.3	59.3	59.9	61.2	62.2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령별	15~29세	100	101	94	106	109
	고용률	31.7	32.7	31.5	36.5	38.6
	30대	159	153	149	140	138
	고용률	75.6	75.7	76.9	74.7	75.0
	40대	222	214	206	206	205
	고용률	79.9	79.5	78.0	79.9	81.4
	50대	221	224	225	222	225
	고용률	75.4	75.7	77.0	76.5	77.2
	60세 이상	213	236	258	278	291
	고용률	45.1	48.4	50.9	52.6	53.2
산업별	15~64세	780	778	766	775	775
	고용률	63.9	64.4	64.6	66.1	66.8
	농림어업	157	168	179	169	172
	제조업	123	123	123	120	119
	건설업	72	84	77	76	72
	도소매음식숙박업	158	152	148	170	17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23	321	326	336	36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2	78	79	81	66

[그림 1] 시도별 15~6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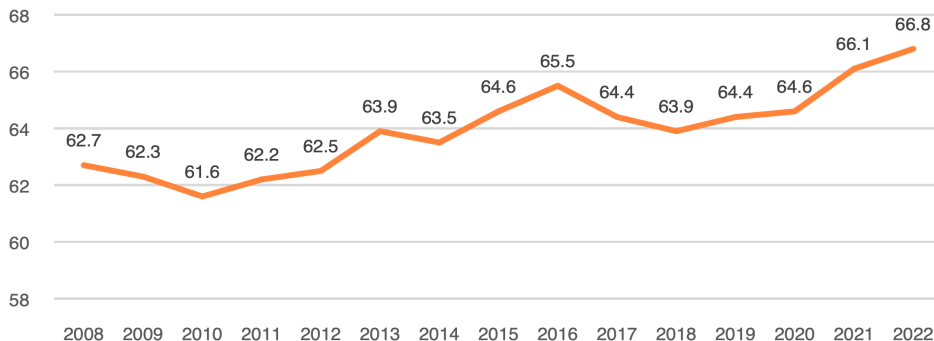
(단위: %)



주: 높은순

[그림 2] 전북지역 연평균 고용률 추이

(단위: %)



- 2022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1,556천 명으로 전년에 비해 1천 명 증가했으나, 2018년에 비해 13천 명이 감소함.
- 경제활동인구는 99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8천 명이 증가하였고, 2018년에 비해 52천 명이 증가함.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대비 남성은 0.1%p, 여성은 2.2%p 각각 상승함. 2018년에 비해 남성은 1.0%p, 여성은 6.5%p 각각 상승함.
- 전년 대비 실업자는 3천 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0.2%p 상승함. 청년실업률은 0.7%p 상승했으며, 2018년 대비 실업자는 2천 명 감소, 실업률은 0.3%p 하락, 청년 실업률은 3.4% 하락함.
- 2022년 고용률은 2021년에 비해 1.0% 상승하였고, 연령별 고용률도 전 연령에 걸쳐서 모두 상승하였음.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40대 이하 취업대상 연령층이 감소하고 있음. 이는 안정된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해 좋은 노동조건을 찾아 지역을 결과로 보임.
- 산업별 취업자수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등의 취업자수는 감소한 데 반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증가하였음.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증가는 지역경제의 자생력의 약화를 의미함.
- 2022년 기준 시도별 고용률(15~64세, OECD 기준)은 66.8%로 전국평균(68.5%)에 비해 1.7%p 미달하며,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임.

-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고용율의 추이를 보면, 2010년, 2014년, 2018년 저점을 찍었으며, 2018년 이후 상승세임. 2022년 기준 전년에 비해 0.7% 높음.

2) 종사상 지위별 고용 현황

(1) 비임금 취업자 현황

〈표 2〉 연평균 비임금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비임금취업자	6,739	6,683	6,573	6,520	6,588
		25.1	24.7	24.5	23.9	23.5
	자영업자	5,638	5,606	5,531	5,513	5,632
		21.0	20.7	20.6	20.2	2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651	1,538	1,372	1,307	1,365
		29.3	27.4	24.8	23.7	24.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87	4,068	4,159	4,206	4,267
		70.7	72.6	75.2	76.3	75.8
	무급 가족종사자	1,101	1,077	1,042	1,007	955
		4.1	4.0	3.9	3.7	3.4
전북	비임금취업자	309	314	329	332	336
		33.8	33.8	35.3	34.9	34.8
	자영업자	239	244	254	260	260
		26.1	26.3	27.3	27.3	26.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8	34	35	37	43
		15.9	13.9	13.8	14.2	16.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1	211	218	223	218
		84.1	86.1	86.2	85.8	83.5
	무급 가족종사자	70	70	75	72	76
		7.7	7.5	8.0	7.6	7.9

- 전국적으로 비임금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전북지역은 2020년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낮아지기는 했으나, 코로나대유행 전에 비해 높음.
-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비임금취업자 비중은 34.8%로 2021년에 비해 0.1% 하락했으나, 2018년(33.8%)에 비해 1.0%p 높고, 2022년 전국(23.5%)에 비해 11.3%p 높음.
-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전북지역은 2021년까지는 상승세였음. 2022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은 26.9%로 2021년 27.3%에 비해 0.4%p 하락했으나, 2018년(26.1%)에 비해서는 높음.
- 전국적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하다가 2022년에 약간 반등했음. 전북지역은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저점을 찍은 후 반등하고 있음. 전북지역이 전국에 비해 비중이 낮음. 2022년 기준으로 전북지역은 16.5%이며, 전국(24.2%)로 7.7%p 낮음. 이는 전북지역 자영업의 영세성과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높은 이유를 반증함.
-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나, 전북지역은 2020년 상승한 이후, 다시 낮아지고 있음. 2022년 7.9%로 코로나대유행 이전인 2019년 7.5%에 비해 높음. 2022년 전국현황(3.4%)에 비해 4.5%p가 높음.
-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또는 퇴출)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특수고용직 직종(플랫폼 등)에 취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현실은 전북지역의 고용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자영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수입규모(2019년 기준 연 1,300만원으로 전국 최저)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인 해결이 요구됨.

(2) 임금취업자 현황

〈표 3〉 전라북도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임금노동자 비중(%)	74.8	75.4	75.6	76.1	76.5
	전체	20,084	20,440	20,332	20,753	21,502
	상용	13,722	14,216	14,521	14,887	15,692
		68.3	69.5	71.4	71.7	73.0
	임시	4,851	4,795	4,483	4,634	4,678
		24.2	23.5	22.0	22.3	22.8
	일용	1,460	1,429	1,328	1,231	1,132
		7.5	7.0	6.6	6.0	4.2
전북	임금노동자 비중(%)	66.1	66.1	64.8	65.2	65.3
	전체	605	613	604	621	632
	상용	386	400	412	432	438
		63.8	65.3	68.2	69.6	69.3
	임시	155	149	141	148	159
		25.6	24.3	23.3	23.8	25.2
	일용	64	63	50	42	35
		10.6	8.4	8.5	6.6	5.5

주: 2018-2022년 4/4분기 기준

-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2020년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2018년 수준에 미달함. 2022년 기준 전북지역 현황은 65.3%로 전국(76.5%)에 비해 11.2%p 낮음
- 전북지역 상용노동자비중은 전반적으로 상승세이나 2022년 기준 전년에 비해 0.3% 하락했고, 전국평균(73.0%)에 비해 3.7%p 낮음. 전북지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 상승하여 같은 기간 동안 전국(4.7%)에 비해 0.8%p 높음.
- 전북지역 임시직 노동자 비중은 하락하다가, 2020년을 경과하며 상승세로 전환했음. 전국적 추세도 동일함. 2022년 기준 25.2%로 전국평균(22.8%)에 비해 2.4%p 높음.

- 일용노동자 비중은 2018년 이래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2022년 기준 5.5%로 전국평균(4.2%)에 비해 1.3%p 높음.
- 전북지역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전국에 비해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음.

3) 노동조건 현황

(1)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표 4〉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시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전 체〉	26,822	27,123	26,904	27,273	28,089
	1~14시간	1,095	1,302	1,304	1,512	1,577
		4.1	4.8	4.8	5.5	5.6
	15~35시간	4,115	4,100	4,652	5,194	6,451
		15.3	15.1	17.3	19.0	23.0
	36~52시간	16,704	17,287	16,770	16,970	16,628
		62.3	63.7	62.3	62.2	59.2
	53시간 이상	4,505	4,027	3,342	3,108	2,950
		16.8	14.8	12.4	11.4	10.5
	일시휴직	403	407	837	490	483
1.5		1.5	3.1	1.8	1.7	
	주당평균 취업시간	41.5	40.7	39.0	38.9	38.3
전북	〈전 체〉	915	928	932	953	968
	1~14시간	48	57	56	70	82
		5.2	6.1	6.0	7.3	8.5
	15~35시간	156	165	183	196	229
		17.0	17.8	19.6	20.6	23.7
	36~52시간	559	571	558	564	546
		61.1	61.5	59.9	59.2	56.4
	53시간 이상	141	125	113	114	99
		15.4	13.5	12.1	12.0	10.2
	일시휴직	10	9	22	8	12
1.1		1.0	2.4	0.8	1.2	
	주당평균 취업시간	40.2	39.5	38.3	38.4	37.2

- 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은 상승세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현황은 34천명(+3.3%), 전국 현황은 482천명(+1.5%)가 각각 증가(상승)함.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비중은 8.5%로 전국(5.6%)에 비해 2.9%p가 높음.
-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노동자의 비중도 상승세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현황은 73천명(+6.7%), 전국 현황은 2,336천명(+7.7%)가 각각 증가(상승)함.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비중은 23.7%로 전국(23.0%)에 비해 0.7%p 높음.
- 36시간 이상 52시간 미만 노동자의 비중은 2019년 이후 하락세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현황은 13천 명(-4.7%), 전국 현황은 76천 명(-3.1%) 각각 감소(하락)함.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비중은 56.4%로 전국(59.2%)에 비해 2.8%p 낮음.
- 53시간 이상 노동자의 비중은 하락세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현황은 42천 명(-5.2%), 전국현황은 1,555천명(-6.3%) 각각 감소(하락)함.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비중은 10.2%로 전국(10.5%)에 비해 0.3%p 낮음
- 일시휴직자 비중은 2020년에 급등하였으나, 이후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2년 기준 전북지역 비중은 1.2%로 전국(1.7%)에 비해 0.5%p 낮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전반적으로 하락세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지역 현황은 3.0시간, 전국 현황은 3.2시간 각각 감소함. 2022년 기준 전북지역 현황은 37.2시간으로 전국 평균(38.3시간)에 비해 1.1시간 적음.

(2) 상용직 월평균 임금

〈표 5〉 전라북도 상용직 월평균 임금

(단위 : 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월평균 임금 (상승률)	3,259,281	3,405,769	3,447,287	3,581,564	3,717,328
		4.3	4.5	1.2	3.9	3.8
전북	월평균 임금 (상승률)	2,901,251	2,992,628	3,028,036	3,082,279	3,192,759
		5.5	3.1	1.2	1.8	3.6
전국-전북 차이		358,030	413,141	419,251	499,285	524,569

- 최근 5년(2018년~2022년) 상용직 월평균임금 추이를 전국평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격차가 심화되었음.

2. 산업 경기 현황

1) 제조업

(1) 전북지역 제조업 현황

- 2022년 평균 전북지역 제조업 BSI¹⁾전망은 83으로 전년 대비 1p 상승한데 반해, 업황은 81로 전년 대비 2p 하락. 전국 전망(83)은 전년 대비 8p 하락. 업황(80)도 전년 대비 12p 하락함.

〈표 6〉 전라북도 제조업 업황 및 전망

구분		장기 평균 ¹⁾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북	BSI ²⁾	75	62	64	56	83	81
	전망	79	64	64	57	82	83
전국	BSI ²⁾	79	75	72	66	92	80
	전망	81	78	73	68	91	83

주 : 1) 2003.1월 ~ 2022.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 매출 BSI: 2022년 전망은 97로 전년 대비 2p 하락, 실적은 95로 전년 대비 6p 하락,
- 생산 BSI: 2022년 전망은 97로 전년 대비 3p 하락, 실적은 94로 전년대비 6p 하락.
- 채산성 BSI: 2022년 전망은 78로 전년 대비 6p 하락, 실적은 76으로 전년 대비 6p 하락.
- 자금사정 BSI: 2022년 전망은 82로 전년 대비 동일, 실적도 81로 전년 대비 동일.
- 전년에 비해 2022년 거의 모든 부문에서의 전망 및 실적이 전년에 비해 악화되었음.

1) 기업경기실지수(BSI):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 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표 7〉 전라북도 제조업 BSI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 출 ¹⁾	BSI	73	78	64	101	95
	전망	(75)	(70)	(66)	(99)	(97)
생 산 ¹⁾	BSI	77	83	70	100	94
	전망	(81)	(85)	(72)	(100)	(97)
신규수주 ¹⁾	BSI	74	79	69	97	89
	전망	(78)	(80)	(69)	(98)	(92)
가 동 료 ³⁾	BSI	76	80	70	98	92
	전망	(80)	(81)	(71)	(99)	(95)
채 산 성 ⁵⁾	BSI	77	80	76	82	76
	전망	(78)	(80)	(76)	(84)	(78)
원자재구입가격 ³⁾	BSI	121	111	113	147	145
	전망	(121)	(114)	(111)	(141)	(143)
제품판매가격 ³⁾	BSI	95	90	90	109	110
	전망	(95)	(89)	(88)	(108)	(110)
자금시장 ⁶⁾	BSI	71	77	69	81	81
	전망	(71)	(77)	(69)	(82)	(82)
제품재고수준 ²⁾	BSI	108	110	108	109	99
	전망	(107)	(111)	(107)	(109)	(98)
생산설비수준 ²⁾	BSI	107	108	110	103	101
	전망	(107)	(108)	(110)	(104)	(101)
설비투자실행	BSI	91	92	88	100	96
	전망	(91)	(93)	(89)	(99)	(98)
인력시장 ²⁾	BSI	91	94	101	84	76
	전망	(93)	(96)	(102)	(88)	(77)

주 : 1) 「확대, 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과잉, 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 응답업체 구성비(%) + 100 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 「상승, 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 응답업체 구성비(%) + 100
 4) 「계획대비 수정증액, 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 응답업체 구성비(%) + 100
 5) 「호전, 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 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 내는 당해 9-11월에 조사된 해당월(10-12월) 전망치 평균

(2) 광공업²⁾ 생산동향

- 2022년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지수(추정치)는 94.8로 전년 대비 2.8% 증가.
- 전년에 비해 화학제품(-6.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6.6%), 1차금속(-6.4%)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3.1%), 의약품(20.1%), 고무·플라스틱(22.3%) 등이 증가했음.
- 산업별로는 전년동분기대비 광업(-11.6%)은 감소, 제조업(3.2%), 전기·가스업(1.6%)은 증가함.

〈표 8〉 전라북도 광공업 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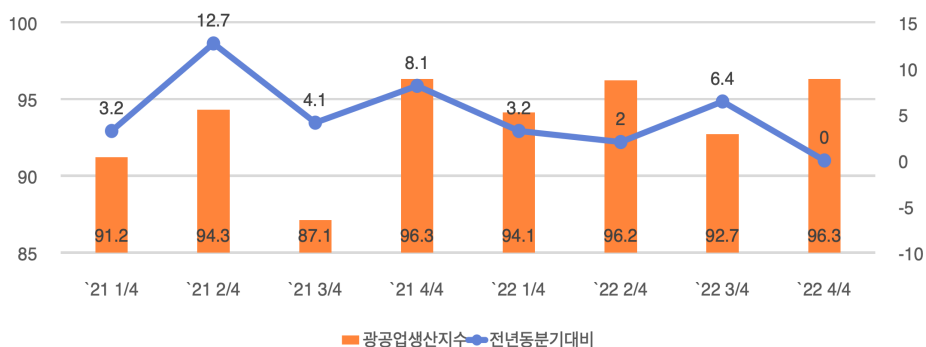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간 ^p	1/4	2/4	3/4	4/4 ^p
지수	원계열	97.1	91.2	86.2	92.2	94.8	94.1	96.2	92.7	96.3
	계절조정계열	-2.5	-6.1	-5.4	7.0	-	94.8	94.2	96.5	93.5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0.7	-5.4	-4.2	8.1	2.8	3.2	2.0	6.4	0.0
	전월(기)비	6.2	-1.5	1.4	4.6	-	0.0	-0.6	2.4	-3.1

주: 2015=100, p는 추정치

[그림 3] 전라북도 광공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단위 : %)



주: 광공업생산지수 2015=100
'22 4/4분기는 추정치

2) 산업분류에 따르면 대분류로 광공업이고 중분류로 하면, 광업(B)과 제조업(C)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광업에 의한 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봐도 무방하다.

〈표 9〉 전라북도 제조업 주요 업종별 생산 동향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광공업생산지수(불변)	97.1	91.2	86.2	92.2	94.8
광업	96.4	97.1	103.2	77.3	68.3
제조업	95.7	89.6	84.3	90.5	93.4
식료품	70.7	64.4	55.4	60.3	68.2
음료	122.3	129.0	117.9	103.7	124.5
기계장비	91.3	91.0	102.5	118.2	144.6
전자부품·컴퓨터·영상	108.6	93.5	85.5	111.9	104.7
기타운송장비	103.4	88.9	80.6	97.7	81.5
비금속광물	104.4	92.9	82.6	83.2	75.7
전가기업	110.3	106.0	103.1	108.9	110.6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2) 비제조업

(1) 비제조업 일반현황(2018~2022)

- 2022년 평균 전북지역 비제조업 전망 BSI는 69로 전해 대비 3p 상승, 업황 BSI는 68로 전해 대비 1p 상승함. 전국의 경우 전망 BSI(81)는 3p 상승, 업황 BSI는 2p 상승함.

〈표 10〉 전라북도 서비스업 업황 및 전망

구분		장기 평균 ¹⁾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북	BSI ²⁾	65	61	64	59	67	68
	전망 ³⁾	69	63	66	58	66	69
전국	BSI ²⁾	75	78	73	63	79	81
	전망 ³⁾	77	78	73	64	78	81

주: 1) 2003.1월 ~ 2022.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쁜,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전월에 조사된 당해(1~12월)에 전망BSI 평균

- 매출 BSI: 2022년 전망(80)은 전년 대비 7p 상승, 업황은 79로 전년 대비 5p 상승함.
- 재산성 BSI: 2022년 전망(78)은 전년 대비 2p 상승, 업황은 75로 전년 대비 1p 하락함.
- 자금사정 BSI: 2022년 전망(74)은 전년 대비 1p 상승함. 현황(74)은 전년과 동일함.

- 인력사정 BSI: 2022년 전망(75)은 전년 대비 7p 하락함, 현황은 72로 전년 대비 7p 하락함.
- 2022년에 업황은 전년수준을 유지했으나, 이후 전망(채산성, 인력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특히 하반기 들어 모든 부문에서 전망과 업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표 11〉 전라북도 서비스업 BSI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¹⁾	BSI	71	72	57	74	79
	전망	(72)	(74)	(60)	(73)	(80)
채산성 ²⁾	BSI	76	79	65	76	75
	전망	(78)	(79)	(67)	(76)	(78)
자금사정 ²⁾	BSI	73	73	63	74	74
	전망	(75)	(75)	(63)	(73)	(74)
인력사정 ³⁾	BSI	82	81	84	80	72
	전망	(83)	(83)	(84)	(82)	(75)

주: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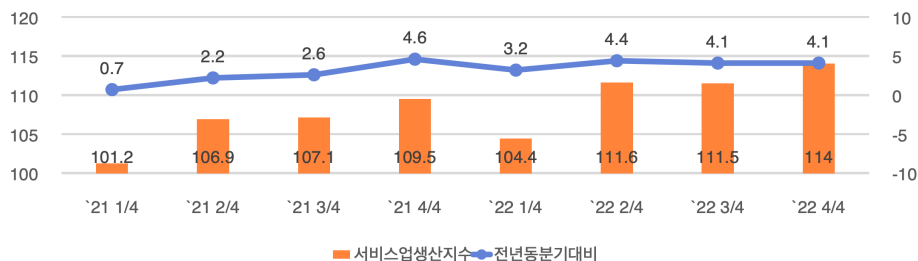
4) () 내는 전월에 조사된 당해년(01~12월) 전망BSI 평균치

(2)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2018~2022)

- 2022년 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불변)는 110.4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1.5%),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등(-0.8%)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 보험(6.0%), 숙박 . 음식점업(20.0%), 예술·스포츠·여가(6.7%), 보건 . 사회복지(3.6%) 등에서 증가함.

[그림 4] 전라북도 서비스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단위 : %)



주: 서비스업생산지수 2015=100
'22 4/4분기는 추정치

〈표 12〉 전라북도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	103.8	104.9	103.6	106.2	110.4
수도·하수·폐기물처리	99.5	98.3	99.7	101.8	100.3
도소매	101.3	100.7	99.7	102.2	104.1
운수·창고	104.8	103.7	89.8	90.9	96.7
숙박·음식점	89.9	87.4	70.8	71.4	85.7
정보통신	107.9	109.6	109.6	112.6	116.2
금융·보험	112.9	116.5	133.2	140.1	148.8
부동산	109.9	113.9	125.8	130.7	133.9
전문·과학·기술	91.7	93.3	94.6	100.1	10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101.4	102.4	93.8	96.3	95.5
교육	101.0	99.9	97.1	97.3	97.5
보건·사회복지	114.4	121.9	123.9	126.3	130.8
예술·스포츠·여가	104.4	107.7	100.7	108.7	116.0
협화·수리·개인	98.6	95.8	88.6	90.5	95.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2015=100

(3) 소매판매 현황(2018~2022)

- 2022년 소매판매액지수(추정치)는 102.6으로 전년 대비 0.2% 감소함. 전문소매점(0.5%)에
서 증가했으나, 대형마트(-5.5%),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0.1%), 승용차 및 연료소매

점(-1.7%)등에서 감소함.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의 판매 감소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보임.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가상승 및 향후 불안정한 경기에 대비한 합리적 소비 경향의 영향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3〉 전라북도 소매판매액지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매판매액지수(불변)	101.0	101.5	102.3	103.4	102.6
백화점					
대형마트	94.5	85.2	83.6	79.8	75.4
슈퍼마켓 잡화점 및 편의점	103.3	103.0	105.2	104.3	103.2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106.6	109.6	115.0	115.2	113.2
전문소매점	97.7	98.4	96.7	99.2	99.7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행조사
주: 2015=100

3) 건설업

〈표 14〉 전북지역 건설수주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P
전체수주액	3,358,561	1,616,643	3,418,023	2,909,215	3,673,162	4,734,038	2,651,338	3,410,642	4,620,994	4,247,252
건조업	건축	1,514,818	950,232	2,157,153	2,114,379	1,902,504	2,200,134	1,886,999	2,376,951	2,804,052
	토목	1,843,743	666,411	1,260,870	794,836	1,770,658	2,533,904	764,339	1,033,691	1,816,942
발주자별	공공	854,889	598,788	1,462,663	1,026,814	1,560,865	2,287,118	1,145,081	1,104,511	1,960,164
	민간	2,464,688	903,057	1,899,537	1,805,097	2,097,077	2,389,698	1,501,187	2,268,523	2,639,050
	국내외기관	19,893	16,861	4,683	5,352	9,167	1,890	920	471	12,350
	민자	19,091	97,937	51,140	71,952	6,053	55,332	4,150	37,137	9,430

- 2022년 건설수주(추정)액은 4조 2,472억으로 2021년에 비해 약 3,747억이 감소함.
- 공종별에서는 2021년에 비해 건축이 318억이 감소하였고, 토목이 3,419억이 감소함. 발주자별에서는 2021년에 비해 공공이 3,491억이 감소했으며, 민간이 615억이 감소함.

- 2022년 건설수주의 특징은 전년에 비해 토목공종과 공공발주가 크게 감소했음. 이는 2021년과 정확히 반대경향을 띠고 있음.

4) 수출입 통계

(1) 주요품목별 수출 동향(2018-2022)

- 2022년 전북지역 수출액(추정치)은 전년 대비 5.2%가 증가한 8,222백만달러를 기록함.
- 비철금속(11.2%), 기타일반기계류(18.9%),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7.4%) 등이 증가했으나, 화학섬유(-63.3%), 기타화학제품(-6.1%),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제품(-8.6%)등이 감소함.
- 2022년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

〈표 15〉 전라북도 주요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

(단위 :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¹⁾
전체	7,828.4	6,537.4	5,841.7	7,818.6	8,222.1	5.2
기타 일반기계류	796.0	660.3	705.8	781.6	929.6	18.9
은	4.1	19.2	17.4	21.2	57.7	172.2
경공업 기타 제품		46.7	68.9	87.8	119.5	36.1
기타 석유 제품		2.9	1.0	0.7	37.2	5,214.3
플라스틱 제품		48.3	45.3	59.7	101.2	69.5
기타 유기 및 무기 화합물	1,216.6	850.6	601.7	765.3	822.3	7.4
화학 섬유	274.9	241.4	234.2	203.0	74.4	-63.3
기타 화학제품	608.5	578.8	510.2	758.2	712.3	-6.1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	592.3	468.2	452.2	697.5	637.5	-8.6
비철금속	468.5	483.5	504.3	895.2	995.6	11.2

주 : 전년 대비

(2) 주요품목별 수입 동향(2018-2022)

- 2022년 수입(추정)액은 6,497.8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7.6백만 달러(6.5%) 증가함.
- 사료(39.0%), 목재(78.5%), 기타 자본재(7.7%)등이 증가했으나, 기타 유기화합물(-13.3%),

석탄(-14.8%), 자동차 부품(-8.3%) 등이 감소함.

- 수입액은 2020년까지 감소세였다가, 2021년 반등했으나, 2022년에는 증가폭이 완화됨.

〈표 16〉 전라북도 주요품목별 수입액 및 증감

(단위 :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전 체	5,446.0	4,986.9	4,771.6	6,100.2	6,497.8	6.5
사료	577.5	579.2	542.0	634.9	882.2	39.0
목재		203.4	158.9	165.8	296.0	78.5
기타 자본재	150.1	158.7	160.2	177.9	191.6	7.7
기타전기기기	146.2	130.7	98.1	95.8	145.0	51.4
펄프		62.7	51.4	62.6	80.6	28.8
비철금속 설		180.1	144.7	229.9	221.0	-3.9
기타 무기화합물		107.7	77.5	138.9	159.5	14.8
자동차 부품	123.6	124.3	104.8	205.6	188.5	-8.3
석탄	123.6	72.0	72.7	117.8	100.4	-14.8
기타 유기화합물	761.9	675.5	681.3	1058.0	917.0	-13.3

주 : 전년 대비

3. 가계동향³⁾

1) 소비자심리지수(CCSI⁴⁾, 2018~2022)

- 2022년 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95.1로 전년 대비 7.8p 하락함.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95.5로 전년 대비 7.7p 하락함. 2022년 7월부터 표본이 바뀌어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해도, 2022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월 또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각 지수의 연 단위 평균값임.

4) 소비자심리지수(CCSI):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는 17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선택, 이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지수임. 장기평균치(2003년~2021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의미임. 매년 변경될 수 있음.

〈표 17〉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b)	2022(a)	a-b
전북	105.3	101.0	92.1	102.9	95.1	-7.8
전국	103.2	98.3	88.1	103.2	95.5	-7.7

주: 2022년 3분기(7월)부터는 실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2) 소비자동향지수(CSI⁵⁾, 2018~2022)

- 2022년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음. 현재 경기뿐만 아니라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급증하였음.

〈표 18〉 전라북도 소비자동향지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b)	2022(a)	a-b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 ¹⁾	95	93	87	91	88	-3
	생활형편전망 ²⁾	100	96	92	98	89	-9
	가계수입전망 ²⁾	100	98	92	98	95	-3
	소비지출전망 ²⁾	108	108	99	107	109	2
	현재경기판단 ¹⁾	83	75	60	79	63	-16
	향후경기전망 ²⁾	93	83	80	96	72	-24
여타지수	취업기회전망 ²⁾	93	86	78	91	80	-11
	금리수준전망 ²⁾	126	101	87	118	140	22
	가계저축전망 ²⁾	97	95	92	96	95	-1
	가계부채전망 ²⁾	97	99	99	100	101	1
	주택가격전망 ³⁾	103	98	108	122	92	-30
	임금수준전망 ³⁾	124	118	110	117	115	-2

주: 1)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3)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전망

- 5) 소비자동향(태도)지수(CSI): 장래의 소비지출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경제상황과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이 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됨. 지수의 값은 0~200사이에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크면 그 반대임.

3) 소비자 물가동향(2018~2022)

- 2018년 이후 소비자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물가가 대폭 상승하였음. 2022년 기준 물가상승율은 전년에 비해 5.4%, 2020년에 비해서는 8.1% 상승함.
- 특히,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⁶⁾는 전년 대비 6.3%, 2020년에 대비 9.9% 상승하였음.
- 상품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9%가 상승했으며, 특히,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의 상승폭이 큼. 이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결과로 보임.
- 서비스물가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음. 특히 개인서비스(오락 및 문화, 음식 및 숙박)가 5.2% 상승함.

〈표 19〉 전라북도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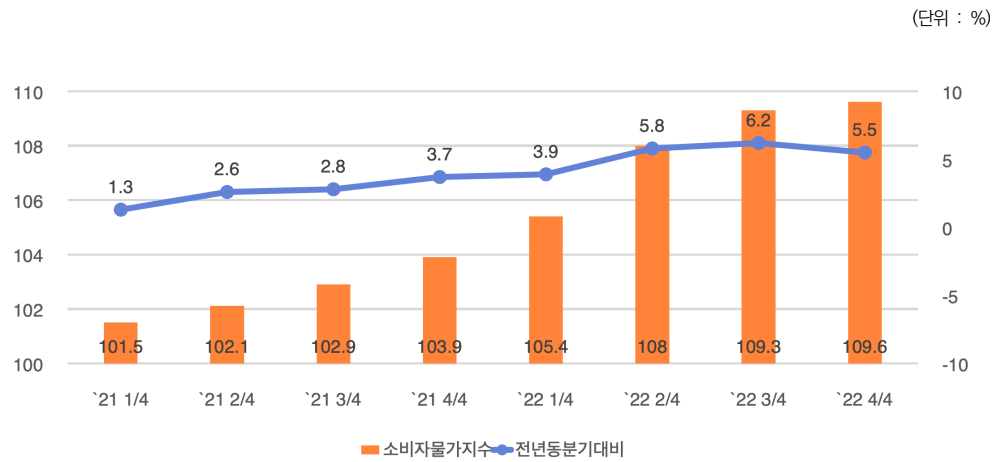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증감
소비자 물가지수		99.2	99.5	100.0	102.6	108.1	5.4
지출목적별	생활물가지수	99.4	99.5	100.0	103.4	109.9	6.3
상품물가		99.6	99.1	100.0	103.2	110.3	6.9
	농축산물	93.8	92.8	100.0	108.2	111.3	2.9
	공업체	101.2	100.6	100.0	102.6	110.1	7.3
	전기 수도 가스	99.9	101.3	100.0	97.8	109.4	11.9
서비스물가		98.7	99.8	100.0	101.9	105.6	3.6
	집세	100.2	100.2	100.0	100.3	100.9	0.6
	공공서비스	102.6	102.0	100.0	101.4	102.9	1.5
	개인서비스	96.8	98.8	100.0	102.4	107.7	5.2

주: 2020=100
증감은 전년대비

6) 구입빈도와 가격변동에 민감한 쌀, 배추 등 141개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임.

[그림 5] 전라북도 소비자물가지수 및 등락률



주: 소비자물가지수 2020=100

[부록] 전북지역 4/4분기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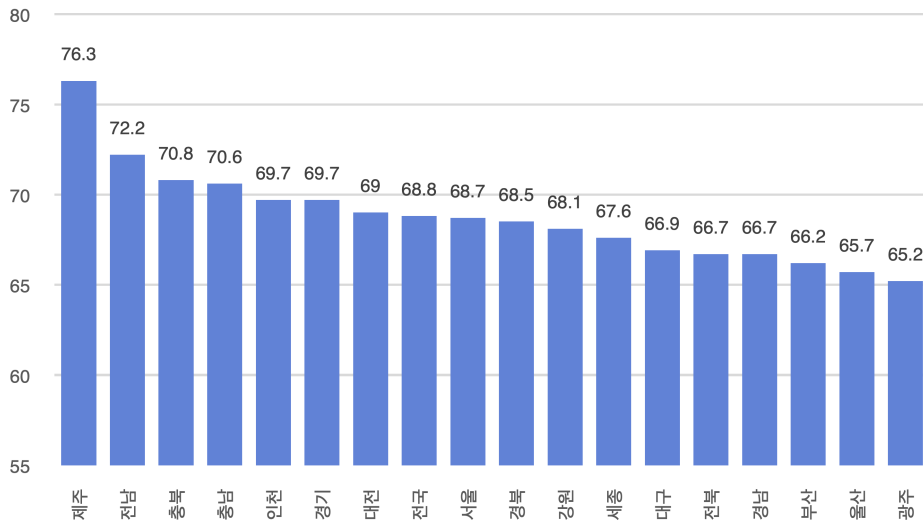
〈표 1〉 전라북도 4/4분기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5세 이상 인구		1,567	1,560	1,553	1,556	1,556
경제활동인구		946	957	970	976	987
성별	남성	544	546	546	551	543
	참가율	70.8	71.4	71.7	72.0	70.9
	여성	402	411	423	425	444
	참가율	50.3	51.7	53.5	53.8	56.2
실업자		22	23	23	20	26
실업률		2.4	2.4	2.4	2.1	2.6
청년실업자		9	9	7	2	8
청년실업률		8.2	8.2	6.8	2.1	6.7
취업자현황		923	934	947	955	961
연령별	15~29세	100	100	101	113	106
	30대	159	152	152	136	142
	40대	220	211	207	207	202
	50대	223	224	224	224	227
	60세 이상	222	247	263	277	285
산업별	농림어업	167	172	176	164	170
	제조업	124	123	119	123	124
	건설업	84	81	76	74	69
	도소매음식숙박업	153	158	154	182	17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19	321	337	336	358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6	79	83	76	67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241	247	257	266	255
	무급가족종사자	74	77	78	68	78
	상용	385	401	420	434	440
	임시	149	146	146	148	152
	일용	74	64	47	39	37

[그림 1] 시도별 4/4분기 15~64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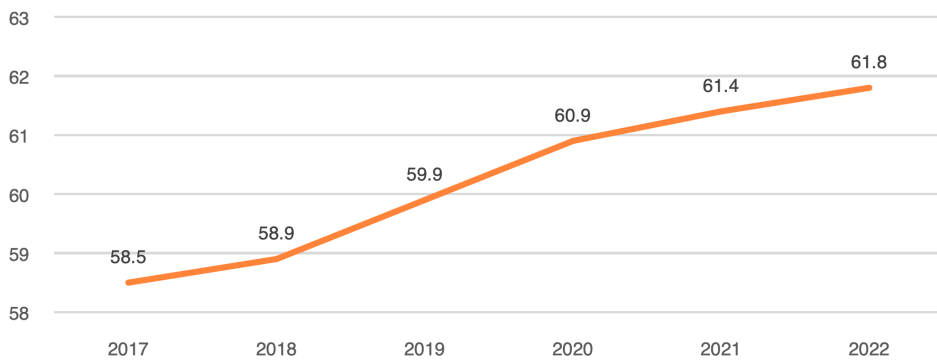
(단위: %)



주: 2022년 4/4분기 기준, 높은순

[그림 2] 전북지역 4/4분기 고용률 추이

(단위: %)



주: 4/4분기 기준

〈표 2〉 전북지역 4/4분기 연령대별 고용률 및 증감현황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고용률	58.9	59.9	60.9	61.4	61.8
	증감	0.4	1.0	1.0	0.5	0.4
15~19	고용률	3.6	5.1	6.2	5.8	6.0
	증감	0.2	1.5	1.1	-0.4	0.2
20~29	고용률	46.0	45.6	46.4	52.5	50.8
	증감	-0.6	-0.4	0.8	6.1	-1.7
30~39	고용률	76.6	76.2	79.2	73.2	78.0
	증감	1.3	-0.4	3.0	-6.0	4.8
40~49	고용률	80.0	79.1	79.4	80.8	80.9
	증감	-0.9	-0.9	0.3	1.4	0.1
50~59	고용률	75.7	76.1	76.8	76.9	77.6
	증감	-0.3	0.4	0.7	0.1	0.7
60세 이상	고용률	46.6	49.9	51.1	51.6	51.6
	증감	1.7	3.5	1.2	0.5	0.0

주:증감현황은 전년 동분기 대비

〈표 3〉 전라북도 4/4분기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단위 : 천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임금노동자 비중(%)	65.9	65.4	64.7	65.0	65.5
전체	608	611	613	621	629
상용	385	401	420	434	440
	63.3	65.6	68.5	69.9	70.0
임시	149	146	146	148	152
	24.5	23.9	23.8	23.8	24.2
일용	74	64	47	39	37
	12.2	10.5	7.7	6.3	5.8

주: 2018~2022년 4/4분기 기준

〈표 4〉 전라북도 4/4분기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 천명, 시간,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923.0	934.0	946.3	955.3	961.3
36시간미만	200.3	216.3	242.0	299.7	342.6
36시간이상	719.0	711.3	692.0	649.3	608.6
일시휴직	4.3	6.3	12.7	6.3	10.3
주당평균 취업시간	40.1	39.8	38.6	37.9	36.6

〈표 5〉 전라북도 4/4분기 제조업 업황 및 전망

구분		장기 평균 ¹⁾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북	BSI ²⁾	75	58	62	66	87	73
	전망	79	59	61	65	89	77
전국	BSI ²⁾	79	72	73	82	92	72
	전망	81	74	72	75	90	72

주 : 1) 2003.1월 ~ 2022.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표 6〉 전라북도 4/4분기 광공업 생산지수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간 ^p	1/4	2/4	3/4	4/4 ^p
지수	원계열	98.2	93.0	89.1	96.3	94.8	94.1	96.2	92.7	96.3
	계절조정계열	97.7	89.7	87.1	94.8	-	94.8	94.2	96.5	93.5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0.7	-5.4	-4.2	8.1	2.8	3.2	2.0	6.4	0.0
	전월(기)비	6.2	-1.5	1.4	4.6	-	0.0	-0.6	2.4	-3.1

주: 2015=100, p는 추정치

〈표 7〉 전라북도 4/4분기 제조업 BSI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 출 ¹⁾	BSI	69	74	73	102	85
	전망	(72)	(75)	(73)	(103)	(90)
생 산 ¹⁾	BSI	73	78	79	100	87
	전망	(77)	(81`)	(76)	(103)	(91)
신규수주 ¹⁾	BSI	69	75	77	96	81
	전망	(72)	(77)	(75)	(99)	(85)
가 동 률 ³⁾	BSI	72	73	80	97	84
	전망	(77)	(76)	(78)	(100)	(90)
채 산 상 ⁵⁾	BSI	76	82	80	80	72
	전망	(78)	(83)	(80)	(83)	(76)
원자재구입가격 ³⁾	BSI	114	107	118	150	135
	전망	(116)	(111)	(116)	(144)	(137)
제품판매가격 ³⁾	BSI	90	88	97	109	104
	전망	(91)	(89)	(96)	(108)	(105)
자금사정 ⁵⁾	BSI	71	77	75	81	79
	전망	(69)	(77)	(73)	(83)	(80)
제품재고수준 ²⁾	BSI	111	108	104	96	100
	전망	(110)	(109)	(105)	(98)	(98)
생산설비수준 ²⁾	BSI	109	107	106	101	99
	전망	(109)	(108)	(107)	(102)	(98)
설비투자실행	BSI	90	90	91	102	93
	전망	(89)	(92)	(92)	(101)	(94)
인력시장 ²⁾	BSI	93	94	97	77	78
	전망	(95)	(97)	(100)	(80)	(76)

주 : 1)「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4)「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 내는 당해 9-11월에 조사된 해당월(10-12월) 전망치 평균

〈표 8〉 전라북도 4/4분기 제조업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감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여도
광공업생산지수	0.7	-5.4	-4.2	8.1	0.0	-
광업	13.9	10.0	-8.6	-31.2	-10.8	-0.04
제조업	0.6	-5.7	-4.6	9.2	-0.3	6.40
식료품	6.4	4.7	-5.0	11.0		
음료	18.9	17.9	-4.0			
기계장비	-2.4	-10.3	8.3	44.3		
전자부품·컴퓨터·영상	-11.3	-18.6	2.6	14.6	-32.0	-0.86
기타운송장비		-23.8	-45.5			
비금속광물			-12.1	12.6		
고무·플라스틱			14.3	16.7	12.0	0.37
나무제품			-5.6	8.5		
1차금속		-19.0	7.2	18.7	-9.5	-0.77
자동차	-0.8	-13.3	-11.5	17.5	20.3	3.33
의약품				-19.3	36.0	0.53
금속가공		2.1	-9.4	-23.8		
화학제품	-7.9	-5.3	-6.9	-10.3	-13.0	-1.53
전가·가스업	0.5	-3.1	-0.9	2.5	2.9	0.32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주: 전년동분기대비

〈표 9〉 전라북도 4/4분기 비제조업 업황 및 전망

구분		장기 평균 ¹⁾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북	BSI ²⁾	65	62	65	58	68	70
	전망 ³⁾	69	61	64	58	63	70
전국	BSI ²⁾	75	74	76	70	83	77
	전망 ³⁾	77	75	73	68	83	79

주: 1) 2003.1월 ~ 2022.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 「좋은」응답업체 구성비(%) -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당해 9~11월에 조사된 해당월(10~12월) 전망치 평균

〈표 10〉 전라북도 4/4분기 비제조업 BSI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 ¹⁾	BSI	72	68	60	79	76
	전망	(70)	(71)	(58)	(77)	(79)
채산성 ²⁾	BSI	76	76	67	78	74
	전망	(73)	(76)	(65)	(80)	(77)
자금사정 ²⁾	BSI	74	74	66	75	70
	전망	(73)	(73)	(63)	(75)	(71)
인력사정 ³⁾	BSI	81	82	85	80	67
	전망	(82)	(83)	(84)	(80)	(69)

주: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 내는 당해 9~11월에 조사된 해당월(01~12월) 전망BSI 평균치

〈표 11〉 전라북도 4/4분기 서비스업 주요 업종별 생산 증감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여도
서비스업생산지수(불변)	1.1	2.0	-3.1	4.6	4.1	-
수도·하수·폐기물처리	0.7	5.6	0.0	4.4	-6.1	-0.15
도소매	0.6	0.2	-2.3	4.1	0.9	0.16
운수·창고	-1.4	1.1	-15.7	6.7	3.8	0.26
숙박·음식점	-4.0	-2.1	-26.4	18.9	20.4	1.13
정보통신	6.9	-0.3	2.3	2.9	-2.7	-0.12
금융·보험	2.4	5.5	14.8	4.1	10.0	1.40
부동산	4.2	8.5	7.3	4.3	-2.3	-0.06
전문·과학·기술	3.3	0.8	1.3	5.3	6.2	0.26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0.9	6.7	-12.9	4.8	-1.8	-0.07
교육	0.7	-0.8	-3.1	-1.2	0.2	0.03
보건·사회복지	4.5	5.7	-1.0	3.5	4.0	0.70
예술·스포츠·여가	-6.9	3.0	-7.7	16.6	11.8	0.30
협화·수리·개인	0.5	-1.1	-12.8	7.6	6.1	0.25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전년동분기대비

〈표 12〉 전라북도 4/4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감

(단위 :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기여도
소매판매액지수(불변)	-1.3	2.5	-2.8	3.3	-0.7	-
백화점	-	-	-	-	-	-
대형마트	-9.1	-7.8	1.6	-10.9	-4.9	-0.26
슈퍼마켓 집화점 및 편의점	-4.4	0.8	1.7	4.2	-3.0	-0.52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3.4	6.9	-0.2	-1.4	6.5	2.21
전문소매점	-1.9	1.6	-6.9	8.8	-5.3	-2.13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주: 전년동분기대비

〈표 13〉 전북지역 4/4분기 건설수주 공종별 발주자별 액수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수주액	1,221,396	1,356,731	1,695,909	2,227,802	1,108,363
	증감	-1.5	11.1	25.0	31.4	-50.2
공종별	건축	수주액	512,736	854,110	1,128,682	1,200,619
		증감	-45.6	66.6	32.1	6.4
	토목	수주액	708,660	502,621	567,727	1,027,183
		증감	138.5	-29.1	12.9	80.9
발주자 별	공공	수주액	823,086	705,646	579,492	1,175,607
		증감	54.7	-14.3	-17.9	102.9
	민간	수주액	485,396	650,241	1,116,417	1,034,227
		증감	-45.5	68.7	71.7	-7.4
	국내 외국 기관	수주액	728	0	0	9,612
		증감	137.9	-100.0	-	-
	민자	수주액	12,086	844	0	8,356
		증감	-	-93.0	-100.0	-

주 : 전년동분기대비

〈표 14〉 전라북도 4/4분기 품목별 수출액 및 증감

(단위 :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 체	수출액	1,869.7	1,577.2	1,620.5	2,097.7	1,862.2
	증감	13.1	-15.6	2.7	29.4	-11.2
기타 일반기계류	수출액	200.1	156.4	192.9	191.0	250.1
	증감	19.6	-21.9	23.4	-1.0	31.0
은	수출액				0.4	26.5
	증감				-97.4	6,425.9
경공업 기타 제품	수출액				24.2	36.9
	증감				18.5	52.4
기타 석유 제품	수출액				0.1	10.5
	증감				-81.8	16,713.3
플 라 스틱 제 품	수출액				19.3	27.4
	증감				62.5	42.1
기 타 유 기 및 무 기 화 합 물	수출액	267.1	220.7	161.1	208.5	169.1
	증감	36.5	-17.4	-27.0	29.4	-18.9
화 학 섬 유	수출액			69.6	40.3	0.0
	증감			16.0	-42.1	-100.0
기 타 화 학 제 품	수출액		129.5	107.6	183.3	134.8
	증감		-4.2	-16.9	70.4	-26.5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 품	수출액		119.0	128.8	174.4	120.8
	증감		-12.7	8.3	35.4	-30.8
비 철 금 속	수출액		112.4	163.3	246.4	188.6
	증감		-5.3	45.3	50.9	-23.5
화 물 차	수출액	223.6	209.5	188.6	271.9	
	증감	-22.8	-6.3	-10.0	44.2	
차 량 부 품	수출액	146.3	73.8	66.1	66.9	
	증감	26.2	-49.5	-10.5	1.2	
기 타 음 식 료 소 비 재	수출액	36.2	59.3	65.1	88.7	
	증감	43.6	64.0	9.8	36.3	
기 타 개 별 소 자 반 도 체 및 부 품	수출액			30.8	31.5	
	증감			11.2	2.4	

주 : 전년동분기대비

〈표 15〉 전라북도 4/4분기 품목별 수입액 및 증감

(단위 : 백만\$,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수입액	1,411.5	1,211.7	1,194.7	1,672.9	1,515.7
	증감	19.0	-14.2	-1.4	40.0	-9.4
사료	수입액	157.5	133.4	117.8	178.8	244.9
	증감	47.5	-15.3	-11.7	51.8	37.0
목재	수입액	68.2	40.4	40.6	60.1	92.3
	증감	73.8	-40.8	0.6	48.0	53.7
기타 자본재	수입액			16.6	18.2	30.0
	증감			-28.5	9.2	65.0
기타전기기기	수입액				26.1	36.2
	증감				3.8	38.6
펄프	수입액				17.7	27.7
	증감				52.6	56.7
비철금속	수입액		41.8	40.2	62.9	41.0
	증감		-16.4	-3.9	56.6	-34.9
기타 무기화합물	수입액			21.3	54.6	32.2
	증감			-20.1	156.6	-41.0
자동차 부품	수입액	34.7	22.6	26.5	69.9	44.5
	증감	50.7	-34.8	17.2	163.3	-36.3
석탄	수입액	34.7	22.6	26.5	69.9	44.5
	증감	50.7	-34.8	17.2	163.3	-36.3
기타 유기화합물	수입액		176.3	195.4	279.6	230.1
	증감		-14.2	10.8	43.1	-17.7

주 : 전년동분기대비

〈표 16〉 전라북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 %p)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4	2/4	3/4	4/4 ^p
전북	100.9	102.5	94.1	107.2	103.4	103.4	87.1	86.3
전국	97.3	100.0	94.4	106.0	103.6	100.9	88.7	88.6

주: 2022년 3분기(7월)부터는 신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표 17〉 전라북도 4/4분기 소비자동향지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4	2/4	3/4	4/4 ^p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 ¹⁾	93	94	88	94	91	91	84	84
	생활형편전망 ²⁾	96	98	93	98	97	95	82	81
	가계수입전망 ²⁾	98	98	93	100	99	99	90	91
	소비지출전망 ²⁾	108	108	98	112	109	114	107	104
	현재경기판단 ¹⁾	74	77	68	85	78	76	50	49
	향후경기전망 ²⁾	83	87	86	98	92	84	56	55
여타지수	취업기회전망 ²⁾	83	89	80	96	94	93	67	64
	금리수준전망 ²⁾	127	88	92	131	133	139	144	143
	가계저축전망 ²⁾	91	95	94	95	95	98	87	85
	가계부채전망 ²⁾	99	98	99	100	101	99	102	103
	주택가격전망 ³⁾	100	109	118	116	103	114	83	68
	임금수준전망 ³⁾	120	118	110	121	120	118	113	110

주: 1) 6개월전과 비교한 현재
 2) 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3) 현재와 비교한 1년후 전망

〈표 18〉 전라북도 4/4분기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4	2/4	3/4	4/4 ^p
소비자 물가지수		104.7	104.8	105.3	109.2	111.0	113.4	114.7	115.2
지출 목적별	등락	2.1	0.1	0.4	3.7	3.9	5.8	6.2	5.5
	생활물가지수	105.3	105.6	105.3	110.9	112.6	116.2	117.2	117.5
	등락	2.3	0.3	-0.4	5.3	4.7	7.2	7.3	6.0
상품물가		103.5	102.8	104.1	108.7	110.7	113.2	115.1	116.1
	등락	2.6	-0.6	0.8	4.4	4.6	7.8	8.2	6.8
	농축산물	115.0	111.6	127.6	131.0	132.9	132.4	138.2	134.5
	등락	8.2	-2.9	13.2	2.7	0.6	2.2	5.8	2.7
	공업체	102.8	102.5	101.0	106.5	108.4	112.5	112.6	113.2
	등락	1.5	-0.3	-1.5	5.1	5.8	9.1	8.2	6.3
	전기 수도 가스	88.7	89.9	86.5	87.6	87.7	92.6	93.6	106.4
	등락	0.3	1.3	-3.7	1.3	2.5	8.3	14.7	21.5
서비스물가		105.9	106.8	106.6	109.7	111.1	112.4	113.7	114.1
	등락	1.7	0.8	-0.1	2.9	3.0	3.5	3.9	4.0
	집세	101.3	101.2	101.1	101.6	101.8	102.2	102.2	102.3
	등락	0.0	-0.1	-0.1	0.5	0.6	0.8	0.7	0.7
	공공서비스	102.6	101.3	97.8	101.6	102.1	103.1	102.8	102.7
	등락	0.2	-1.3	-3.0	3.9	1.9	1.7	1.0	1.1
	개인서비스	108.2	110.3	111.6	114.9	117.1	119.0	121.2	121.7
	등락	2.6	1.9	1.2	3.0	4.0	4.8	5.8	5.9

주: 2020=100
 등락은 전년동분기대비

참고 자료

-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매월, 고용노동부)
-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 (매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 전라북도 고용동향 (매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매월,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 호남권 지역경제동향(분기별, 호남지방통계청)
-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매월, 한국은행 전북본부)
-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매월, 한국은행 전북본부)
- 분기별 전북경제 모니터링 결과(한국은행 전북본부)
- 수출입현황 (매월, 관세청 통관기획과)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건설경기동향조사 등
-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 동향 보고서(매월, 김연택)

2023년 1분기 전라북도 주요 노동 소식

강문식(전북노동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광의 불법공사와 노동자 사망

지난해 12월 29일, 전주시의 옛 대한방직 부지(효자동3가 151 일대) 철거공사 중 노동자 1명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공사의 발주처는 ㈜자광으로 2개의 철거업체에게 나누어 공사를 발주했다. 총 공사금액은 54억 원이지만 철거업체별 공사금액이 각각 38억 원, 16억 원으로 쪼개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을 피하게 되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수년 전부터 건설자본들과 정치권 일대에서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대한방직 부지는 2000년대 초반 전주 신시가지 개발사업 당시 대한방직 측에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개발에서 제외된 토지이다. ㈜자광은 2017년 10월에 대한방직으로부터 해당 부지를 1,980억 원에 매입하고, 153층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자광의 부지 매입자금은 롯데건설의 연대보증으로 조달되어 개발사업의 실제 주체 역시 롯데 자본일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해당 부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공업용지인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러한 용도변경은 기업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의 특혜를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결국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광은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대대적인 부지 철거 공사에 나선 것이다. 작년 12월 22일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 주요 단체장들과 재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철거공사 착공식이 열렸고, 착공식 후 불과 8일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그 뒤에 대한방직 부지 철거공사가 착공 신고도 하기 전에 이루어진

불법공사였음이 밝혀졌다. 도내 유력자들이 대거 참석한 착공식은 법과 안전을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가 되지 않았을까.

○ 5년 새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세아베스틸

3월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로 연소탑 내부의 슬러그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치료하다 2명 모두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세아베스틸에서는 2022년 5월, 9월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해 각 1명씩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2019년 이후 세아베스틸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8명이다.

이번 중대재해를 다루는 고용노동부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일로부터 3일이 지난 3월 5일에서야 세아베스틸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재해일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부상자 중 1명을 경상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슬러그 제거작업에 대해서만 작업중지를 명령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전기로는 정상 가동 중이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가 분진 제거작업을 완료해 전기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흘을 기다려 준 뒤 ‘연소탑 내부 분진 제거작업’만 작업중지 명령을 한 것”이라며 “기업의 이야기만 듣고 재해의 내용과 규모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 전라북도를 ‘노 스트라이크 존’으로?

김관영 전북지사가 「월간중앙」 3월호, YTN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전라북도를 파업청정지역, 이른바 ‘노 스트라이크 존’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하여 물의를 빚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전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이 노동과 환경문제이므로 ‘노 스트라이크’존을 만들고, 환경 단속은 불시 단속에서 사전예고제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를 위해 민주노총과도 협의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전북본부는 3월 1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협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노동권을 제약하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할 안전장치가 곧 헌법의 노동3권이니 전라북도는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경쟁은 지방 정부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윤석열 정부와 전북경찰의 건설노조 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단속을 지시한 이래 건설업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에서도 3월 14일에 전북경찰청이 건설노조전북본부 내 타워크레인전북지회 사무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조합이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밝히고 집회를 개최한 행동을 두고 공동협박이라는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전북민중행동은 압수수색 이튿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번 압수수색의 성격을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정부·경찰의 주장대로라면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불법화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노동3권이 사문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전주시는 외면한 전주시보건소 노동자 괴롭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인정

올해 2월 22일, 상급자에게 언어폭력 및 성폭력을 당했던 전주시 보건소 노동자 2명의 산재가 인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서에서 이들이 "새로 발령받아 부임한 선별진료소 현장책임자(가해자)의 인권침해, 갑질,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감시, 압박, 허위문서작성 결과보고, 성추행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적응장애'의 질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견책 처분에 그쳐 논란이 지속 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해자 A씨는 2022년 1월 14일, 전주시 덕진보건소 6급 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A씨의 발령 이후 화산선별진료소 공무원 직원들에게는 휴식을 취할 수 없는 형태로 업무가 배치됐고, A씨에 의한 반말과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도 이어졌다. 한 노동자는 A씨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등 성폭력도 겪었다.

사건 이후 해당 공무원 노동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이하 노조)는 피해 노동자 16명을 대표해 작년 3월 8일에 전주시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6월 13일에 A씨에 의한 인권침해, 괴롭힘 및 성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전주시 에 사과 및 직원 보호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A씨를 통해 인권위에 이의를 제기해 결정문을 번복하게 했다. 인권위는 8월 25일에 인권침해와 괴롭힘 사건을 불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은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하라는 취지의 새로운 결정문을 채택한다.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가해자 A씨의 성폭력 사실은 인정됐으나 전주시는 가해자 징계 조치에 나서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다.

가해자 징계가 결정된 것은 올해 2월 24일이다. 가해자는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A씨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돼 올해 1월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한 반면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3월 23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가 시종일관 가해자 감싸기로만 일관하고 시간을 끌며 피해자 보호조치는 외면했다”며 “처음부터 현재까지 모든 순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결정문 번복은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재심 절차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각, 각하되지 않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자격은 신청인과 관련 기관에게만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면죄부를 주기 위해 인권위가 가해자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A씨에게 내린 견책 처분 역시 공무원 징계규정 중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으로 가해자가 저지른 징계 사유에 한참 못 미치는 양정이다. 2020년에 전주시는 언어폭력과 성희롱 발언을 한 공무원 B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전라북도에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사건과 대조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판정서에서 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가해자 A씨의 행태 뿐만 아니라 “사건의 장기 조사와 재조사”, “지방 언론과 뉴스 등의 노출로 인한 2차 가해 행위”에서도 기인한다고 적시했다. 전주시가 가해자를 감싸기 위해 시간을 끌며 벌여 온 일련의 절차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전주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도 손 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가 1월 25일에 개소하였다. 센터는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에 근거하여 법률 및 교육 지원,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노동 인식개선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센터는 「차별없는 노동사회네트워크」가 수탁하여 위탁, 운영된다.

○ 중소기업은행 직장내 괴롭힘

1월 12일, 장수농협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 B씨가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 근처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1년 여간 상사 C씨 등의 괴롭힘을 겪어오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장수농협은 C씨 등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장수농협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맡긴 노무사 D씨가 B씨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 사건은 장수의 또 다른 농협에서 2021년에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지적이다. 무진장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일하던 E씨는 점장으로부터 폭언·모욕에 시달리고 개인 업무 지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다 오다가 2021년 6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무진장축협은 조사 후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몇 달 뒤 신고자 E씨를 해고하였다. 그 과정에서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맡았던 노무사 F씨가 무진장축협 노동사건에서 회사측 대리를 맡고 있는 노무사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2022년에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도 여성노동자들에게 취사, 세탁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빈발하는 중소기업은행 직장갑질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해 전북·광주·전남의 노동단체가 모여 「중소금융기관 직장갑질 OUT 호남권 대책위원회」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월 27일에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농협 직장갑질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3월 9일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감독 시행 등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라인 정비로 일시 가동 중단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스타리아 모

텔의 도장공장 증설 공사를 진행했다. 전주공장 공사로 일부 1차, 2차 하청업체에서는 휴업이 발생하는 등 여파가 있었으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10월 노사 합의로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3만 6,000대 중 전주공장으로 8,000대를 이관하기로 하였다. 전주공장은 중 대형 트럭과 버스를 생산해왔으나 수입모델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연간 최대 생산능력 10만5,000대 중 30~40% 가량의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회사는 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다른 지역 공장으로 전환 배치 하였고 가동률을 낮추거나 라인의 공(空)피치도 잦았던 실정이다.

○ 민주노총전북본부 소식

■ 제40차 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총전북본부는 2월 21일에 제4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박두영 본부장은 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노조탄압, 공안탄압이 몰아치고 있다"며 "탄압에 맞서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키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대의원대회에서 2023년 사업기조를 "윤석열 정권에 맞선 민중연대 강화, 불평등타파와 사회공공성 강화, 전라북도 노-정 교섭 쟁취"로 정했다.

■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는 지난 2월 14일 튀르키예-시리아 일대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에 연대하기 위해 긴급 모금 및 구호물품 모으기를 진행했다. 1달 동안 총 225만 원이 모금되어 모금액은 시리아 난민을 돕는 국내 단체 헬프시리아를 통해 현지의 화이트헬멧으로 전달하였다.

■ 2023 투쟁선포대회

3월 15일 16시, 민주노총전북본부 2023년 투쟁선포대회가 개최되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조합원 900여 명이 전주시청 광장에 모여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 기업 유치를 위해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김관영 전북지사, 우범기 전주시장을 규탄하고 5월 총력투쟁과 7월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PC방 알바 임금체불 사건, 노동청 '2차 가해' 논란

분리조사 요구 거부하고 대질조사, 결국 막말 노출 ... 피해자 “근로감독관 ‘사용자 맞춤형’ 설명했다”

* 본 글은 매일노동뉴스 2023년 3월 6일자로 보도된 기사로, 매일노동뉴스의 동의를 얻어 전제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767>

홍준표 기자

임금이 체불된 20대 PC방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가해자 분리 조치 없이 대질조사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업주 막말에 노출됐다. 피해자측은 근로감독관이 5명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사항을 사업주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편향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월급 요구에 사장 욕설 “짜가지 없는 X”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생 이하온(20·가명)씨는 광주시의 한 PC방에서 두 달간 일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해 지난해 12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씨는 두 달치 월급 약 190만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최저임금인 9천160원에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주말 야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9시)에 일하며 카운터 업무를 도맡았다. PC방 사장 A씨는 3개월간 수습기간에는 월급의 9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은 50분 근무에 10분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급여일인 10월5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씨는 옛새가 지난 뒤 A씨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A씨는 “짜가지 없는 X이” “이 XX가” 같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임금 미지급 사유 문의에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다른 직원들이 월급 받았는지 개들과 얘기하라”며 욕박질렸다고 이씨는 전했다. 하루 뒤 이씨의 통장에 월급의 일부인 55만원만 들어왔다. 홀로 자취하던 이씨는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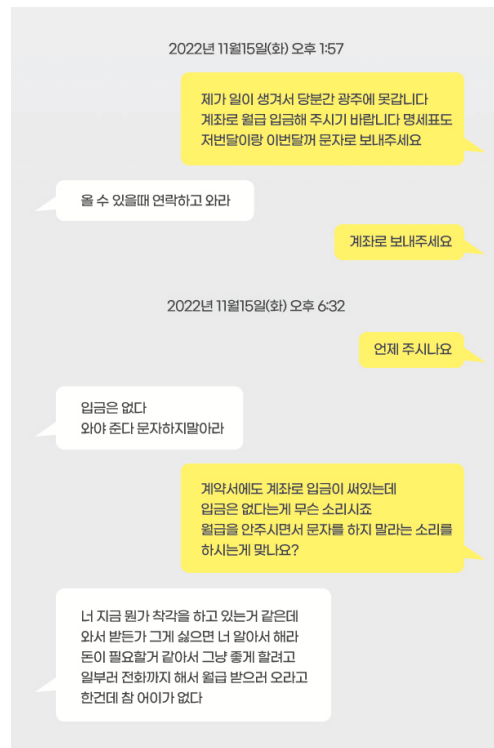
상황은 다음달에도 같았다. A씨가 월급을 주지 않자 이씨가 재차 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결국 이씨는 급여일 다음날 퇴사했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좌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입금은 없다. (직접) 와야 준다”며 거절했다. 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대질조사서 피해자 대면한 사업주 폭언

이씨는 노동청에 달려갔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B씨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다고 한다. 이씨측은 대질조사에 앞서 A씨가 위협할까 걱정돼 개별조사 요구와 분리조사 같은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씨 요구를 묵살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달 3일 진행된 대질조사에서 A씨와 마주해야 했다. 이씨는 아버지, 박영민 공인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와 함께 참석했다. PC방 사장 A씨는 아내와 같이 출석해 나란히 앉았다.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이씨측이 상시근로자가 5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A씨는 “지금 뭐 하는 것이냐”며 “거지XX도 아니고”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박영민 노무사는 “이런 사태를 걱정한 것”이라며 즉각 제지했다. A씨 부부는 아버지가 있는 앞에서 이씨가 흡연한다는 식의 발언도 꺼냈다.

A씨 아내는 “(알바가) 흡연하면서 휴대전화를 갖고 나가면 기본 10분은 쉬었다가 들어온



매일노동뉴스 재구성, 편집 김효정 기자

다”고 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50분 근무에 10분이라고 적은 부분이 지켜졌으므로 휴게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 중 나온 얘기다. 이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진정서 제출할 때 분명히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어 A씨가 너무 쉽게 공격했다”며 “부모님이 계신데도 이렇게 말해 굉장히 당황했다”고 토로했다. B씨는 A씨측의 막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이씨는 전했다.

감독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상세 설명’

핵심 쟁점인 ‘5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해서도 이씨측은 근로감독관이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직원 숫자와 관련해 최초 “(주야간 세 타임에) 시간당 2명씩 근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B씨가 “이렇게 계산하면 가용인원이 6명이 되므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말하자 “교대타임에 1명씩 근무한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B씨가 5명 미만 사업장 기준을 종이로 출력해 A씨에게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A씨측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 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측의 ‘현장조사’ 요구도 막혔다. 이씨측은 주야간 메인·서브 근무자와 매장을 청소하는 직원 등 총 7명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질조사 이후 A씨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 B씨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현장조사 실시 여부는 본인 권한이라며 거부했다.

A씨는 진정 두 달여 만인 최근 급여 약 1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근로수당과 휴게수당은 제외됐다. 이씨측은 B씨가 확정된 금액과 입금액이 똑같다고 전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B씨가 알려준 대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씨는 “A씨가 입금 전후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감독관 “편향조사 아냐, 감독관 권한”

반면 근로감독관 B씨는 ‘편향 조사’는 이뤄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3일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제출한 직원근무표 등 자료를 근거로 체불액을 확정했다”고 했다. 대질조사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이씨는 대학생이고 성인인 데다

사실관계가 다 파악되지 않아 분리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욕설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없지 않나. 이씨 아버지도 동석해 문제없다고 봤다”고 답했다.

‘5명 미만 사업장과 관련한 설명을 왜 했냐’는 질문에는 “A씨가 평일근무를 잘 모르는 듯해 교정해 준 것일 뿐 컨설팅 차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나중에 직원근무표 일체를 확인했으므로 대질조사 당시 A씨 진술 자체도 의미 없다는 의미다. ‘현장조사 요구 거부’ 역시 “근로감독관 권한”이라며 “전체 근무표를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 상주하며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광주지방노동청 관계자는 “대질조사에서 이견이 생기면 흥분해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혹여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피해 대학생 “적어도 중립적으로 조사해야”

이씨측은 ‘을의 위치’에 놓인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는 가해자에게 근로감독관이 강력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방관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해 피해자가 또 다른 상처를 입었다”며 “임금체불은 심각한 범죄인데도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계층별 맞춤형 예방 감독’ 실시 계획도 이 같은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피곤한데도 일했다. 그런데 사장은 임금체불 이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당당했다”며 “일언반구도 없이 돈을 입금한 것도 그렇고, 자신이 갑의 위치라고 생각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씨는 “근로감독관이 대놓고 사장에게 힘을 실어줘서 많이 실망스러웠다”며 “이런 반응이 나오면 또 임금체불을 당하게 되더라도 선뜻 신고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청년노동자가 또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며 이런 말을 남겼다.

“청소년들은 노동청 문턱을 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고용주쪽에 편향된 것을 보고 신뢰를 많이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로자의 편이 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중립적으로 조사했으면 해요.”

제7회 시민권리찾기 법률학교

- 교육일정** 2023년 5월 9일 ~ 18일(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 2주간 4회)
- 교육장소**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 교육실(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3 나우빌딩 2층)
- 참가신청** bit.ly/2023시민법률학교 (온라인 신청만 받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4월 13일 ~ 27일까지
※ 참가 인원은 40명으로 한정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063-252-0041(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교육내용

1강 _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강사: 이덕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일시: 5월 9일 화요일 19시

2강 _ 체불임금, 산업재해, 실업급여 청구

강사: 천성화 공인노무사(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일시: 5월 11일 목요일 19시

3강 _ 윤석열 정부의 달라지는 노동법 (Feat 저녁없는 삶, 직장내 괴롭힘 등)

강사: 박영민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
일시: 5월 16일 화요일 19시

4강 _ 인권 감수성과 인권보장제도 사용설명서

강사: 채민 상임활동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일시: 5월 18일 목요일 19시

2023년 봄 | 통권 제1호

전북노동브리프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 법률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우성상가 3층
063-256-5003 | kctu.jbli@gmail.com